

B12-1 18

SAd.a.6

14

종군위안부 문제의 역사학적 구명

- 일본의 전쟁책임 자료센터 -

*이 자료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진상규명연구위원회가 주최
한 제2차 한일합동연구회(1993. 12. 18-19. 수유리아카데미하우스)에
일본의 전쟁책임자료센타의 안을 요시미 요시아끼(吉見義明 日本
中央大學 教授)교수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38-84 여성평화의집 B01 100-391
전화 263-2802 / 팩스 263-2803

종군위안부 문제의 역사학적 구명

- 일본의 전쟁책임 자료센터 -

*이 자료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진상규명연구위원회가 주최
한 제2차 한일합동연구회(1993. 12. 18-19. 수유리아카데미하우스)에
일본의 전쟁책임자료센타의 안을 요시미 요시아끼(吉見義明 日本
中央大學 教授)교수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38-84 여성평화의집 B01 100-391
전화 263-2802 / 팩스 263-2803

「종군위안부」 문제의 역사학적 구명

일본의 전쟁책임 자료센터 안

서론.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종군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밝히기 위해 「종군위안부」의 전모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확실한 공문서를 통해 확인되는 바에 의하면 「종군위안부」 제도는 적어도 1932년 초에는 창설되어 1945년 8월에 일본이 항복했을 때까지 존재했다. 이 제도하에서 「종군위안부」들은 일본군의 장병, 군속에 의해 매일 계속 윤강당했다. 그리고 일본이 항복한 후에는 자기가 「종군위안부」였다는 사실을 밝히려고 하면 자기의 생활 기반을 완전히 상실해야 한다는 상황에 놓였다. 이렇게 전 「종군위안부」들은 군위안소에서 받은 육체적 정신적인 깊은 상해에 의해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 괴로워하고 있지만 그것을 호소하는 것조차 못하는 상태로 방치되어 왔다.

1992년까지 일본 정부는 「종군위안부」에 있어서 일체의 관여와 책임을 부정했지만 한국에서 여성운동의 결과 1991년에 전 「위안부」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사실을 밝혀 일본 정부에 배상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또 1992년에는 일본군과 일본 정부가 군위안소의 설치, 관리, 운용과 「종군위안부」의 징집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공문서가 민간인에 의해 발견됨으로써 관여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그 이후 일본 정부는 일정한 자료 조사를 하여 1992년 7월 7일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그 조사는 대단히 날림으로 그 이후에도 민간에서 잇달아 정부 소관의 새로운 자료가 발견됐기 때문에 조사를 계속할 수 밖에 없었다. 1993년 8월 4일 일본 정부의 제2차 조사 결과 발표에서는 「종군위안부」의 징집이나 사역이 강제적으로 행해진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동일자의 내각관방장관(内閣官房長官) 담화·내각외정심의회(内閣外政審議会) 「소위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참조].

그러나 정부는 중요한 자료를 비공개, 미조사의 상태로 방치하며 또 피해자인 전 「종군위안부」로부터의 조사도 일부분의 전 「종군위안부」로부터 실시했을 뿐이었다. 게다가 일본 정부, 일본군에 의한 「종군위안부」 제도의 창설과 운용, 「종군위안부」의 강제징집과 강제사역이 국제법에 위반되었다는 점, 혹은 전쟁 범죄였다는 점, 인도에 대한 죄였다는 점 등을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 중대한 인권 침해의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고찰하면서 필요불가결한 역사적 사실을 다면적으로 제시하기로 한다 [법률상 문제는 별도 검토한다].

또 「종군위안부」라는 용어는 그 실태를 나타내는 용어로서는 부적당하고 정확하게는 「군용 성적 노예」라고 해야 하지만 「종군위안부」라는 용어가 지금까지 사용되어 왔다는 역사를 고려하면서 그것을 비판하는 의미에서 괄호를 지어 사용하기로 한다.

I. 군위안소의 개설과 전개

1. 군위안소의 확대

군위안소는 언제 개설되어 어떻게 전개되었던 것일까. 1931년 일본은 만주사변이라고 불리우는, 중국 동북 [「만주」]에 대한 침략전쟁을 일으키나, 다음 해 1월에는 상해 (上海)에서의 전투가 확대되었다. 그 당시 즉 1932년 초 상해에 파병되었던 일본 육해군은 군위안소를 설치하였다 1). 이것이 확실한 자료에 의해 확인된 최초의 사례이다. 중국 동북에도 차례 차례로 군위안소가 설치되었다.

1937년 7월, 일본은 중국에 대해 전면적으로 전쟁을 개시하였다. 순식간에 80만명이나 되는 병력이 중국대륙에 파병되었으나 이에 대응해 1937년 말부터 일본군은 중국에 있는 점령지에 군위안소를 설치하였다.

1941년 12월 일본은 미국, 영국, 오란다 등에 대해 전쟁을 일으켜 동남아시아, 태평양의 넓은 지역을 점령했었다. 1942년 초부터 일본군이 점령했던 이들 지역에 군위안소가 차례 차례로 설치되었다.

2. 군위안부가 설치된 지역과 위안부의 민족별 조사

현재, 일본, 미국, 오란다, 호주의 공문서에 의해 군위안소의 존재가 확인된 지역은 중국, 홍콩, 하문 (門), 프랑스령의 인도지나, 필리핀, 말레이지아, 싱가폴, 영국령의 보루네오, 오란다령의 동인도, 베어마, 타이, 태평양지역의 동부뉴기니아지구, 일본의 충승제도 (沖繩諸島), 소립원제도 (小笠原諸島), 천도열도 (千島列島) [현재 러시아령], 북해도 (北海道)가 있다. 전쟁을 위해 다량의 일본군이 파병되었던 곳에는 어디에나 군위안소가 설치되었다고 생각되어진다. 그 당시 일본군의 회상록에 의하면 당시 일본 위임통치령이었던 태평양의 트럭섬, 코를섬, 사이판과 미국령의 팜, 인도령의 니코발제도에도 위안소가 설치되었다.

「종군위안부」로서 징집되었던 여성들은 일본인, 조선인, 대만인, 중국인,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인, 오란다와 베트남인이 공문서에 의해 확인되었고, 호주사람 간호사가 「종군위안부」가 되도록 강요받았던 것이 밝혀지고 있다 2). 이 외에 일본군이 점령했던 각 지역에서, 그 지역의 여성들이 「종군위안부」가 되었다고 생각되어진다. 그 당시 군인이었던 사람의 회상록에 의하면 베어마사람, 인도사람도 「종군위안부」가 되었던 것이 밝혀졌다.

「종군위안부」의 총수는 10만 또는 20만이라고 알려지고 있으나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일본군은 전쟁 범죄의 추궁을 염려

하여 폐전 직후 중요한 자료를 소각해 버렸으며 현재 남아 있는 것도 일본 정부가 그 대다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민족별 비율도 잘 밝혀져 있지 않으나 얼마 되지 않는 자료를 바탕으로 시험 삼아 추정해 보자. 일본 군의 자료에 의하면 중국전선에서 성병에 걸린 일본군인은 1940년에 1만 4755명이 있었다. 성병 감염시 「상대방 여자」로서 군이 밟하고 있는 수자를 보면 [불명(不明)은 제외] 조선인 51.8%, 중국인 36.0%, 일본인 12.2%가 된다³⁾. 이것은 하나의 예이지만 「종군위안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일본인이 아니라 가장 많았던 것이 조선인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중국인을 비롯한 점령지의 여성들이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3. 군위안소의 형태와 국가의 책임

일본군인이 이용했던 군위안소는 3가지 형태가 있었다. 첫번째는 군직영의 위안소, 두번째는 형식상으로는 민간업자가 경영하나 군이 관리, 통제하는 군인, 군속 전용의 위안소, 세번째는 일반인도 이용하나 군이 지정한 군이용의 위안소로서 군이 특별히 편의를 구하는 위안소이다. 그 중에 첫번째와 두번째의 군직영, 군전용의 위안소의 「종군위안부」에 관해서는 일본국가에 책임이 있으며 세번째 군이용의 위안소에 관해서는 이용의 정도에 따라 책임이 있게 된다. 군위안소로서 가장 많았던 형태는 두번째이다.

4. 일본군이 위안소를 필요로 했던 이유

일본군이 위안소를 필요로 했던 이유는 4가지다. 첫번째는 점령지에 세 일본 군인에 의한 강간사건이 다발했던 것이다. 광범위하게 위안소를 설치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은 1937년 12월 남경(南京) 대학살과 관계가 있다. 1937년 8월부터 10월에 걸쳐 격렬했던 상해(上海) 공방전 후, 일본군은 남경을 향해 침공하였으나 10월부터 12월에 걸쳐 일본군의 진격 루트가 되었던 양자강(揚子江) 일대는 일본군에 의한 학살, 강간, 약탈, 방화 등 지극히 많은 불법행위가 행해졌다. 그 중에도 강간은 변명할 수 없는 위법 행위로서 도적이라도 강간은 안 한다고 하는 엄격한 윤리관을 가지는 중국인의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이와 같은 사태에 당황했던 일본군은 군위안소 설치에 착수했던 것이다. 중지나(中支那) 방면군은 그 전후에 위안시설을 만들도록 지시했다⁴⁾.

1938년 6월 수십만의 병사를 가진 북지나(北支那) 방면군의 참모장은 지휘하에 있는 각 부대에 대한 통첩에서 북부 중국에서 일본군인이 빈번하게

강간사건을 일으키므로 점령지의 중국민중이 일본군으로부터 이탈하고 있다고 말하고 강간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빨리 성적 위안시설을 만들도록 지시했다⁵⁾.

본래 강간사건 방지에는 범죄에 대한 엄중처벌 및 군대내의 인권확립과 병사들의 대우개선으로 대처해야만 하나 일본군은 그와 같은 처치를 취하지 않고 군위안소를 만들어 특정의 여성을 계속적으로 장기간 윤간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대처하여 또 다른 중대한 인권침해를 일으켰던 것이다.

두번째 이유는 장병에 대한 「위안」의 제공이었다. 일본이 개시했던 전쟁은 대의명분이 없는 침략전쟁이었으며 또 승리의 가능성은 없는 무모한 전쟁이었다. 이와 같은 전쟁에 휴가제도도 없는 상태로 장기간 전장에 장병들을 끌어 두기 위해 성적 위안이 필요하다고 일본군은 생각했었다⁶⁾. 일본군은 장병이 일본에 일시 귀국할 수 있도록 휴가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극히 일부의 예를 제외하고는 거의 실현하지 않았다. 건전한 오락시설이 필요하다는 군의들의 제언도 있었으나 거의 실현되지 않았다. 억압적인 군영 환경을 고쳐 무권리 상태에 놓여 있는 병사의 인권을 보증하는 조치는 겸토조차 되지 않았다. 병사에 대한 전시(戰時) 국제법의 교육도 역시 행하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강간사건을 없애기 위한 조치는 전혀 취해지지도 않고 군위안소만이 증가되고 있었다.

세번째의 이유는 성병 문제에 있다. 민간이 운영하는 매춘 장소를 이용한다면 성병이 만연하므로 장병의 치료에 시간이 걸리고 대폭 전력이 떨어지는 것⁷⁾. 그리고 장병이 귀환했을 경우 성병이 일본 국내에 유입되면 일본 민족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⁸⁾ 군관리의 위안소를 만들 필요가 있었다. 군은 민간이 운영하는 매춘장소의 이용을 금지하고 군의는 정기적으로 「종군위안부」의 성병검사를 행하여 병사에게는 콘돔 사용등 예방책을 강구시켰다.

네번째 이유는 군의 기밀 보호, 스파이 방지에 있다. 병사가 점령지에 있는 민간이 운영하는 매춘장소에 다니면 그 지방의 「매춘부」를 통해 장병으로부터 군사상의 기밀이 새어 나갈 염려가 커지므로 군은 자기들이 위안소를 만들어 그것을 항상 감독, 통제했던 것이다⁹⁾. 군위안소에는 현병 등이 정기적으로 들려서 장병과 「종군위안부」와의 관계나 경영 내용을 점검하였다. 스파이 방지를 위해서는 「종군위안부」는 일본신민[일본인, 조선인, 대만인]이어야 되었으나 인수가 모자라 현지의 여성을 징집하였다. 그래서 위안소의 감독, 통제가 한층 더 불가결했었다.

II. 식민지, 점령지의 여성이 「종군위안부」가 되었던 이유

왜 식민지 [조선, 대만]의 여성이나 점령지 [중국, 동남아시아]의 많은 여성들이 「종군위안부」가 되었던 것일까. 그 첫번째 이유는 인종 [민족] 차별에 있다. 소위 「매춘부」가 아닌 일본인 미혼 여성을 「종군위안부」로 한다는 것은 일본군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와 같은 일을 한다면 일본군에 대한 일본인의 신뢰감이 붕괴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인 이외면 그런 고려는 하지 않아도 되었다.

두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국제법상의 제약이다. 일본과 그 식민지였던 조선, 대만에 대해 중국에 파병되었던 일본군은 민간업자를 선택해 보내고 그들 업자들은 1937년 말부터 「종군위안부」의 징집을 시작했었다. 그러나 일본은 1910년 체결되었던 「추업 (추한 일)」을 시키기 위해 부녀자를 매매하는 것을 규제하는 국제조약이나 1921년에 체결된 「부인, 아동의 매매금지에 관한 국제조약」에 가입되어 있었다.

매춘을 목적으로 하는 부인, 아동의 매매를 금지하는 이 조약이 있기 때문에 경찰의 총책임자인 내무성 (内務省) 경보국장 (警保局長)은 1938년 2월 통첩을 각 부현 (府県) 지사에게 보냈다 10). 그것은 일본 국내로부터 「종군위안부」로 도항할 경우는 21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동시에 소위 「매춘부」에 한해 각 경찰서는 신분 증명서를 발급한다고 하는 것이었다. 이 경우는 매춘을 목적으로 한 만 21세 미만의 여성은 전부, 또한 21세 이상의 여성의 경우도 「매춘부」가 아닌 여성에 대해서는 각 경찰서는 신분 증명서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일본으로부터의 「종군위안부」 징집은 극히 한정되었다. 그러나 이 국제 조약에는, 선언만 하면 이 조약을 식민지에는 적용하지 않아도 좋다는 규정이 있었다. 일본 정부는 이 규정을 채용하여 이 조약을 조선, 대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조선과 대만에서 여성의 징집에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일본 정부와 일본군 및 조선총독부, 대만총독부는 편리한대로 해석하였다. 점령지에서도 일본 정부, 일본군은 국제법을 무시하고 전혀 제한 없이 편리한대로 판단하고 행동했다. 이렇게 해서 매춘 경험이 없는 여성이나 미성년의 여성이 일본 이외로부터 많이 징집되었다. 일본군에 있어 성병의 만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바람직한 일이었다.

현재 일본에 재판을 기소하고 있는 9명의 한국인 - 그 당시 「위안부」 - 들은 기소장에 의하면 전원이 징집 당시 21세 미만의 미성년이었다. 일본육군의 공문서에 의하면 대만으로부터 14세의 소녀가 중국대륙 남부에 연행되어 있었다 11). 필리핀의 파나이섬의 이로이로시에 있었던 군위안소에는 조선인 또

는 대만인으로 추정되는 15세의 「종군위안부」가 있었던 것이 확인되고 있다
12). 또 같은 시에 있었던 다른 위안소의 필리핀 사람 「종군위안부」 13명
안에는 10명이 21세 미만으로 최저 연령은 16세였다 13).

- (1) 오카베 나오사부로 (岡部直三郎) 『오카베 나오사부로 대장의 일기』
1982년, 부용서방 (芙蓉書房), 동경 (東京) p.23. 재상해 (在上海) 일본
총영사관 1936년에 있어서 특수 재류 일본인 부녀자의 상황 및 그
규제」／요시미 요시아키 (吉見義明) 편 『종군위안부자료집』 1992년,
대월서점 (大月書店), 동경, pp.91~92.
- (2) 이들 자료에 대해서는 호주 사람 간호사의 경우도 포함해 요시미 편 『종
군위안부자료』 참조. 베트남인 「종군위안부」에 관한 공문서는 니시노 루미
코 『종군위안부와 15년 전쟁』 [1993년, 명석서점 (明石書店), 동경]
에 사진판 자료로 게재되어 있다.
- (3) 대본영 (大本營) 육군부 연구반 「지나 (支那) 사변에 있어서 군기 풍기의
견지에서 관찰한 성병에 대해서」 1940년 10월, 방위청 (防衛廳) 방위
연구소 도서관 소장. 성병의 감염원은 일본군인일 경우가 많았지만, 이
조사는 성병에 걸리지 않았던 병사가 처음으로 감염되었을 때의 상대여
성을 조사한 것이다. 인수는 조선인 여성인 4381명, 중국여성이 30
50명, 일본인 여성인 1032명이다 (일본인은 2418명이지만 일본
국내에서의 감염 비율이 9.4%이기 때문에 이것에 해당하는 1387
명을 빼면 중국에서 감염원이 된 일본 여성은 1031명이 된다. 조선
인은 4403명이지만 조선에서의 감염 비율 0.15%를 감안해서
22명을 뺀다). 「국적 불명 [공사창부] (公私娼婦)」 3751명, 상세치
않은 1133명은 제외. 상대 여성의 모두가 「종군위안부」는 아니지만
대다수가 「종군위안부」라고 생각된다.
- (4) 이이누마 마모루 (飯沼守) 상해 (上海) 파견군 참모장의 일기, 1937년
12월 11일, 남경 (南京) 전사 편집위원회 편 『남경전사자료집』 1989
년, 계행사 (偕行社), 동경, p.211.
- (5) 오카베 나오사부로 (岡部直三郎) 북지나방면군참모장 「군인, 군대의 주민에
대한 행위에 관한 주의 건 통첩」 1938년 6월 27일, 『종군위안부
자료집』 pp.209~210.
- (6) 하야오 토라오 (早尾) 군의 중위 『전쟁에 있어서 특수 현상과 그 대
책』 1939년 6월, 『종군위안부자료집』 p.232. 하야오 군의 중위는 「요
컨대 전쟁생활은 살풍경이기 때문에 성질이 거칠어진다.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군인에게 여자를 안겨 주는 것만큼 좋은 대책은 없다」고 말
했다.

- (7) 북지나방면군 군의부 「간부에 대한 위생교육 순서」 1940년 2월, 『종
군위안부자료집』 p.237. 성병환자의 입원 일수는 평균 86일에 달한다고
하며 대폭 전력이 떨어지는 점에 주의 해야 한다고 한다.
- (8) 육군성 부관 통첩 「대동아전쟁 관계 장병의 성병 처리에 관한 건」
1942년 6월 18일, pp.171~172.
- (9) 독립자동차 제42대대 제1중대 「진중일지」 1942년 7월에 의하면 싱
가풀에 있었던 제25군사령부는 군위안소 설치의 이유를 「풍기의 숙정
및 방첩, 질환 예방」이라고 말하며 7월 4일 이후 민간의 매춘장소를
장병이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위안소 설치의 목적이
강간 방지, 성병 예방과 동시에 「방첩」에 있었다는 것을 제시하는 예이
다 [『종군위안부자료집』 p.354].
- (10) 내무성 경보국장 「지나에로의 도항 부녀자의 취급에 관한 건」 1938년
2월 23일, 『종군위안부자료집』 pp.102~103.
- (11) 아다치 시게카즈 (足立茂一) 금주 (欽州) 현병 분견대장 「호기 증명서」
1940년 6월 28일, 『종군위안부자료집』 pp.135~137.
- (12) 이로이로 병참지부 의무실 「성병 검사의 성적 건」 1942년 9월 27
일 『종군위안부자료집』 p.304.
- (13) 동상, pp.302.

III. 「종군위안부」 정책입안·징집·사역의 지휘명령계통

1. 문제의 소제

우선 「종군위안부」 정책입안·징집·사역의 지휘명령계통을 분석하는 것은 「종군위안부」 제도를 만들고 운영한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를 명확히하는 것으로 된다.

그러나 이 연구에는 현재 중대한 제약이 있다. 최대의 제약은 정부소관자로 가 극히 일부 밖에 공개안되어있는 점에 있다. 첫째로, 방위청자료는 비공개의 것이 상당히 있다. 그 중에서도 수천권 있다는 군인들의 업무일지·지중일지 등 일기류가 비공개이기 때문에 연구를 깊일수 없다. 그 조사가 되면 진상은 상당히 명백히 되리라 생각한다. 둘째로, 경찰자료도 비공개이다. 셋째로, 조선총독부를 관할하고 있었던 척무성(拓務省)·내무성자료가 거의 앓나와있다. 넷째로, 노동성·후생성(厚生省)·재무부(大藏省) 등에 관련자료가 있다고 보지만 비공개이므로 조사를 못한다. 또 이 제도의 창설·운영·「위안부」 징집의 관계자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현상에서는 진상의 해명에는 곤난한 점이 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의 연구이므로 큰 제약이 있다.

2. 파견군에 의한 「군위안소」 설치·「종군위안부」 징집의 지휘계통 [육군]

「군위안소」의 설치, 그리고 「종군위안부」 징집의 지시가 어떻게 되어있었는가를 1942년 초기까지의 육군의 경우에 관해서 반명되고있는 전형적인 다섯가지 사례에 의거해서 검토하자고 한다.

우선 1932년 3월, 오까무라 야수지(岡村寧次) 상해(上海) 파견군참모부장(副長)과 오까베 나오사부로(岡部直三郎) 고급참모는 상해에 「육군위안소」를 만들 지시를 내고 나가미 도시노리(永見俊徳) 참모가 설치에 참여하고 있다 1). 상해파견군의 사령관은 마쓰이 이와네(松井石根) 대장이었다.

1937년 12월, 중지나(中支那) 방면군 [사령관 마쓰이 이와네대장·참모장 쭈까다 오사무(塚田攻) 소장]은 「군위안소」 설치의 지시를 내고, 그지시를 받은 상해파견군에서는 참모제2과 [후방담당] 가 안을 만들고 참모의 조 이사무(長勇) 중좌가 남경(南京)의 위안소 설치를 맡아 하고있다 2). 마쓰이 이와네 군사령관은 1937년 12월에 일어난 남경대학살의 책임으로 전후에 도쿄에서 열린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사형판결이 내리였으나,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도 그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수 있다. [파견군의 행위가 군사령관의 책임으로 된다는 점은 이하 같음].

같은 시기, 제10군참모의 데라다(寺田) 중좌는 현병을 지휘해서 호주 [（湖
州）남경부근]에 위안소를 설치하였다 3). 여기서 맨처음에 징집되어온 「종군위
안부」는 중국인이었다. 이때 제10군사령관은 야나가와 헤이수찌(柳川平助) 중
장이다.

1938년 6월, 북지나방면군 참모장 오카베 나오사부로(岡部直三郎) 중장은
지휘하의 수십만의 각부대에 「군위안소」 설치의 지시를 내고 있다 4). 이때의 군
사령관은 데라우찌 히사이찌(寺内寿一) 대장이었다.

1941년 7월쯤에 관동군 [사령관 우메주 요시지로(梅津美治郎) 중장, 참모
장 요시모토 데이이찌(吉本貞一) 중장]은 2만명의 조선인「종군위안부」를 징
집하려고 계획하고, 하라 겐시로(原善四郎) 참모는 조선총독부에 의뢰하여 8천
명의 조선인「종군위안부」를 모이고 중국동북(소위 만주)에 보냈다고 한다 5).
이를 증명하는 원자료는 발견되어있지 않고 하라(原) 전참모의 증언을 저술한
책이 있을 뿐이지만,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단기간의 징집이므로 총독부의
직원이 징집에 깊이 관련하였을 것이다. 또 이 시기 조선총독부는 미나미 지
로(南次郎) 대장이었다.

마지막에, 1942년 3월 남방군은 동남아세아·태평양의 각지에 「종군위안
부」를 배치하고 대만군사령부에 대하여 불네어에 보내는 「종군위안부」 50
명 [후에 추가 20명]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만군사령관 [안도 리끼찌
(安藤利吉) 중장]과 대만군참모장 [히구찌 게이시찌로(樋口敬七郎) 소장]은 현
병을 시키고 업자 3명을 선정하고 70명의 대만인「종군위안부」를 불네어에
보내고 있다 6). 남방군의 총사령관은 데라우찌 슈이찌대장, 총참모장은 쭈까다
오사무중장이었다.

이렇게 보면은 다음과 같은 점을 알수있다. 「군위안소」 설치·「종군위안부」
징집의 지시는 제1차상해사변 때에는 상해파견군이 내렸고, 일중전쟁의 초기에
는 중지나방면군이나 북지나방면군이 내렸다. 1941년의 대조련전쟁준비 때에는
관동군이 지시를 내렸다고 추측된다. 아세아태평양전쟁 개시 직후의 194
2년에는 남방군이 내렸다. 이로부터, 육군에서는 각 파견군 [작전군]의 최고지
도부 [참모부]가 지시하고 있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각 파견군 [작전군]은 천
황에 직예하고 군령 [작전] 관계에 대해서는 참모총장의, 군정관계에 대해서는
육군대신의 구체적 [특정사항을 천황에서 위임되고 지시하는 것]를 받고 있었다.

다음으로 보다 구체적인 「종군위안부」 징집 방법을 보면, 우선 점령지의 주
민을 징집하는 경우 각파견군의 지시를 받고 지휘하의 군이나 사단·여단·연
대등의 후방참모가 현병을 지휘해서 점령지의 촌장등 그 지역의 유력자를 시
켜서 주민속에서 「종군위안부」를 징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군의 지시에
의해서, 더구나 소위 「매춘부」가 아닌 보통 여성을 모이는 것이 일반적이었

으므로 징집은 본인의 동의없는 강제적 징집이었다. 예를 들면, 최근의 한 군
인의 일기에 의하면 화중(華中)의 어느 마을에서는 소위 「매춘부」가 아닌
일반 여성들이 강제적으로 징집된 정형을 엿볼수 있다. 일기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져 있다.

「[맨처음의 성병검사 때] 극부의 내신을 하려면 더더욱 부끄러워하고 좀처
럼 꾸우쓰(子) [바지]를 벗지 안했다. 통역과 [치안] 유지회장이 호통치
고서야 겨우 벗었다. 침대우에 바로 눕게 하여 촉진하면 필사적으로 손을
세게 긁었다. 보면 울고 있다. 방을 나가서도 한참 울고 있었다고 한다. 다
음 여자도 같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히려 울고 싶을 정도이다. ……보장(保
長)이나 유지회장들이 마을의 치안을 위해서 하라고 설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것일까? …… 이런 일은 나에게는 맞지 않으며 인간성을 유린하고
있다는 의식이 염두에서 떨어지지 않다.」 7)

이때 점령지의 현병은 각파견군 [관동군을 포함함]의 군사령관이 지휘했다.
다음으로, 두번째의 징집방법을 보면 각파견군이 선정한 업자가 조선·대만·일
본에 나가서 거기서 현병·경찰의 지원을 얻고, 또는 현병·경찰이 업자와 연
휴해서 「종군위안부」를 징집하였다고 생각된다. 현지군이 업자를 선정하는 경
우는 군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단·여단·연대등이 실시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생각된다. 조선·대만에서의 현병의 「종군위안부」 징집업자에로의 종사
는 각총독부가 사실상 양해하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그러나 조선에서의 징집의
실태는 구체적인 자료가 많나와있기 때문에 더 잘 알 수 없다.

업자의 선정은 각파견군의 요구에 따라서 조선군사령부·대만군사령부가 진행
하는 경우도 있었다. 업자는 군 또는 재외공관 [영사관]이 발행하는 허가서
혹은 증명서를 반드시 가지고 가야했다 8).

그런데 조선군사령관·대만군사령관은 천황에 직례하고 군령관계에 대해서는
참모총장의, 군정관계에 대해서는 육군대신의 구체 [지시]를 받았다.

육군대신은 일본내지의 현병을 지휘하고 조선·대만의 현병의 인사·복무등을
직할하였다. 조선군사령관은 조선현병대사령관을 지휘하고 대만군사령관은 대만현
병대장을 지휘하였다.

참고도표: 육군의 해외부대지휘계통 [1942년]



* 지나파견군은 중지나파견군을 중심으로 북지나방면군 [북경 (北京)] 과 제23군 [광주 (廣州)] 를 지휘하에 두고 1939년 9월에 설치되었다.

3. 해외각파견군과 육군중앙과의 관계

각 파견군은 천황의 명령으로 출동하여 참모총장의 조언에 기초한 천황의 명령으로 작전에 종사하였다. 「종군위안부」 관계는 각 파견군의 참모부 [특히 후방참모] 가 담당하여 필요에 따라서 육군성이 지시를 내고 통제하였다. 각 파견군에 대한 지휘권은 천황이 가지고 있으나 천황에서 권한의 일부가 위임되어 참모총장이 군령 [작전] 관계를 육군대신이 군정관계를 담당하였다. 거기서 현지의 군사령관의 권한은 천황에서 수권되고 있으므로 직접적으로는 군정관계는 육군대신에서, 군령관계는 참모총장에서 수권되었다고 판단된다.

4. 육군중앙에 의한 「종군위안부」 정책의 통제와 직접지도

육군성에서는 처음에는 군기풍기의 유지의 점에서 병무국 (兵務局) 이, 위생관리·성병만연방지의 점에서 의무국이 지시를 내고 관여해갔다.

우선 병무국병무과가 입안한 「군위안소 종업부등 보집에 관하여」란 문서에 의하면 이것은 육군성부관통첩으로서 북지나방면군·중지나파견군에 1938년 3월 4일에 나와있다 9). 이것에 의하면 육군성은 ①파견군이 선정한 업자가 유죄 비슷한 방법으로 일본내지에서 「종군위안부」의 보집을 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일본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허물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파견군 [현지군] 이 징집업무를 통제하고 업자선정을 더 단단히 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즉 육군성은 강제징집 [물리적인 강제뿐만 아니라 속이거나 정신적인 강제를 가한 경우를 포함함] 의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그것을 방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지시를 조선·대만에 대해서는 내리지 않았다. 적어도 이런 지시가 나왔다는 것을 기술한 문서는 발견안되고 있다. 이는 육군성이 조선·대만에서는 강제징집을 방지하기 위한 초치를 하나 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것은 중대한 의무위반으로 된다.

이 통첩을 발출한 육군성부관은 구시부치 쎈이찌 (櫛淵 一) 대좌, 결재 (決裁) 한것은 우메즈 요시지로 (梅津美治郎) 육군차관 [패전시의 참모총장이며 전함 미즈리호에서 항복문서에 서명한 인물], 이마무라 히또시 (今村均) 병무국장이었다. 이 통첩은 수기야마 하지메 (杉山元) 육군대신의 위임을 받고 내려진 것이었다.

다음으로 1940년 9월 19일, 육군성부관 가와하라 나오이찌 (川原直一) 대좌에서 육군 각 부대에 교육참고자료로서 송달된 「지나사변의 경험에서 불

수 있는 군기진작 (軍紀振作) 대책」은 「약탈, 강간, 방화, 부로 (俘虜) 참살등」 일본군인에 의한 불법행위가 다발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10). 이속에서 강간의 다발은 「군위안소」 설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그 후에도 각지에서의 강간은 없어지지 않아 「군위안소」가 연이어 설치된 것은 육군중앙이 강간방지의 실효있는 초치를 취하지 안했기 때문이며 「군위안소」가 계속해서 유지된 것은 각 파견군의 군사령관에 책임이 있는 것이며, 또 육군대신에 충분한 방지초치를 취하지 안했던 책임, 감독소홀의 책임이 있다고 할수 있다. 또 이 공문서에서 육군성은 「군위안소」의 감독지도의 적부는 「지기 (志氣)」의 진흥, 군기의 유지, 범죄 및 성병의 예방등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된다」고하여 그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시인하고 있는 점에서 11), 즉 「군위안소」에서의 계속적인 인권침해를 시인 혹은 방지하려고 안했던 점에서 육군대신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 당시의 육군대신은 도오조 히데끼 (東條英機) 대장이었다.

다음으로 금년 6월이 되고 우리가 새로 발견한 육군성간부의 업무일지에 의하면 1941년말의 아세아태평양전쟁 개시 이후, 육군성까지가 위안소 개설에 나서고 있었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즉 긴바라 세쓰조 (金原節三) 육군성 의무국 의사과장 [1941년 11월 8일 이전에는 의사과원] 의 「업무일지적록 (摘錄)」에 의하면, 개선을 상정하여 네덜란드영 (領) 동인도 [인도네시아] 를 비밀리에 시찰한 후마다 (深田) 군의소좌는 귀국해서 1941년 7월 26일에 일본군인에 의한 강간방지와 일본군인에로의 성병만연방지를 위하여 위안소를 인도네시아 점령후에 설치하고 촌장에 할당하여 위안부를 징집하도록 육군성에 제언하고 있다 12). 촌장에 할당한다는 것은 바로 강제징집한단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도오고 시게노리 (東郷茂徳) 외무대신이 「종군위안부」의 도항을 군의 증명서에 의하여 진행되도록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942년이후 동남아세아에 도항할 경우 여권은 필요없고 군의 허가 [증명서] 만으로 도항하도록 되었다 13). 다시 말하자면 「종군위안부」는 군의 허가없이는 적어도 동남아세아에는 절대로 가지못하게 되었던 것이다. 군관리의 성격이 더 한층 강화된 것이다.

다음으로, 먼저 본 1942년의 대만군의 보르네어에 보내는 「종군위안부」 징집의 경우 업자와 「종군위안부」의 도항허가를 대만군이 신청하고 있으나 이것에 대하여 육군성은 허가하고 있다 [부관 (副官) 명으로 통달] 14). 이것은 다나가 류우끼찌 (田中隆吉) 병무국장의 결재인 (決裁印) 과 가와하라 나오이찌 (川原直一) 부관의 결행지정인이 있다. 즉 아세아태평양전쟁에 있어서는 「종군위안부」 · 업자의 도항을 위해서는 육군성의 허가까지가 필요한 경우가 있었던

것이다. 이때의 육군대신은 총리대신인 도오조 히데끼 (東条英機) 대장이 겸무하고 있었으며 협의 총책임은 그에게 있다.

1942년 6월 18일의 육군성부관통달에서 육군성은 전출동부대에 성병의 만연방지를 지시하고 이와 관련해서 「군위안소」의 위생관리를 지시하고 있다 15). 이것은 성병관리의 면에서 위안소의 필요성을 시인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한 것이며, 이런 점에서도 육군성에는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서에는 기무라 헤이따로 (木村兵太郎) 육군차관의 결재인이 있다. 부관은 가와하라 나오이찌대좌, 기안 (起案) 은 의무국 위생과였다. 당시의 육군대신은 도오조 히데끼수상의 겸임이었다.

다음으로, 앞에서 본 긴바라일기에 의하면 1942년 9월 3일의 육군성 「과장회보」 [과장들의 공식의 회동 (會同)] 으로서 구라모토 게이지로 (倉本敬次郎) 육군성인사국은상 (恩賞) 과장은 「장교이하의 위안시설을 다음과 같이 만들고 싶다」고 말하여 「북지 (北支) 100, 중지 140, 남지 40, 남방 100 남해, 10, 가라후또 (樺太) 10, 계 400 개소」라는 수자를 들고있다 16). 또 1943년 1월 7일의 「과장회보」에는 「위안시설을 수많이 설치했으나 내지수입의 자는 평판이 나쁘다. 현지 양성자는 평판이 좋다」고, 그 설치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17). 이것은 동남아세아에서의 강간사건의 다발과 성병의 만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드디어 육군중앙이 스스로 「군위안소」의 설치에 나섰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왜 인사국은상과가 「군위안소」 설치에 나섰느냐 하는 점에 대하여 말한다면, 본래 은상과는 군의 위안오락시설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1942년 3월에 육군성관제가 일부 개정되고 은상과는 군인의 「후생에 관한 사항」 일반을 담당할 것이 명기되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전쟁책임자료센터의 최근의 조사에 의하여 육군성건설과와 대본영육군부병참총감부수품본창 (大本營陸軍部兵站總監部需品本廠) 은 공동으로 해외파견 각 군에 위생샷크 (콘돔) 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 수는 판명한 것만이라도 1942년내에 3, 210만개나 된다 18).

「종군위안부」의 수송에 관해서 본다면, 일본육군은 「종군위안부」를 배로 전지에 보내는데 일본육군이 관리하는 일본선적의 군용선을 사용하였다. 조선에서 육로로 중국대륙에 보내는 경우는 경의선 [서울→신의주] 등 조선에 있는 철도를 쓰고 만주에 이르면 반드시 일본자본의 남만주철도를 사용하고 중국대륙에서는 일본군이 사실상 관리하는 중국철도를 사용했다. 중국등 점령지의 이동에 철도가 이용할 수 없을 때는 일본군의 트랙등을 사용하였다. 또 특별한 경우에 「종군위안부」가 비행기로 수송될 때도 있었다. 국제법과의 관련에서 특히 중요한 문제는, 일본본토와 마찬가지로 취급되는 선박 (船舶) 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선박·철도의 수송업무는 대본영육군부 [참모본부를 중심으로 하여 육

군성간부가 가담하여 편성된것] 의 병참총감 [참모차장이 병임] 이 관할하고 지휘하였던 점이다.

마지막으로 네덜란드여성이 자바섬에서 「종군위안부」로 된 케이스를 보면 일본의 패전후 네덜란드가 개정한 바다비아군사법정에서 1948년 3월과 1949년 9월에 13명중 11명이 유죄로 되고 있으며 이로부터도 강제성이 있었다고 명백히 된다. 그 죄명은 ①부녀자를 강제매춘에 연행한 죄, ②매춘강, 제죄, ③강간죄, ④억류자를 부당히 취급한 죄였다.

사건의 개요는 이하와 같다. 1944년 2월, 스마란의 간부후보생대장 [겸 스마란주둔지사령관·징역 12년] 과 후방참모 [제판으로 사형] 은 제16군사령부 [사령관 하라다 구마끼치 (原田熊吉) 중장] 은 억류소의 네덜란드여성을 쓰는 「위안소」 [4 장소] 의 신설을 타진하고 자유의사의 여자만을 고용하도록 주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1944년 4월 일본에서 참모본부 [육군] 의 장교가 다른 용건으로 시찰로 오고 강제매춘이 발각되어 제16군사령부는 이 위안소의 즉시폐쇄를 지시하였다 19). 그러나 관계자의 처분은 없었다.

이것은 이하와 같은 사실을 의미한다. ①일본군은 점령지의 여성에 매춘을 강제하는 것은 위법이 된다고 잘 알고 있었으나 강제매춘을 해서는 않된다는 지시는 백인에 경우만에 내려졌다. 일본인을 제외한 아세아인을 연행할때 대해서는 강제연행을 방지할 지시가 일체 않나온 것이었다 [적어도 그런 사실을 서술한 공문서는 발견안되어 있다]. ②후방참모는 강제를 알수 있었는데 그 감독을 계으로 범죄를 묵인함으로써 사형이 되고, 간부후보생대장도 같은 이유로 유죄가 되었다.

7. 「종군위안부」 징집의 지휘명령계통 [해군]

우선 해군성군무국장 오까 다카주미 (岡敬純) 소장과 병비 (兵備) 국장 호시나 젠시로 (保科善四郎) 소장의 연명으로 1942년 5월 30일에 나온 문서에 의하면 해군성이 동남아세아방면에로의 「종군위안부」 [해군성에서는 「특요인 (特要人)」 이라고 불렀다] 의 배치와 운영방침을 결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다 20). 이에 의하면, 해군성은 제2차분으로서 스라웨시섬 (세레베스섬) 의 마캇사르에 45명, 볼네어섬의 바리크파판에 40명, 마레이의 베난섬에 50명 자와섬의 스라바야에 30명을 [안번과 싱가포르는 미정] 보낸다고 남서방면함대의 참모장의 나카무라 도시히사 (中村俊久) 소장에 통달하고 있다. 따라서 그 송출의 책임은 당시 해군대신이었던 시마다 시게따로 (嶋田繁太郎) 해군대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문서에 의하면 스라웨시섬 남부에는 현지 징집된 이도네시아인 「종군위

안부」 281명이 있었다. 그중의 해군관계 250명에 대해서는 설치허가·감독은 해군민정부장관이 하고, 실체의 징집과 고용계약체결은 민정부 촉탁 [군속]이 한 위안소와, 해군직영의 위안소 [해군장교가 모집하고 경영함] 가 있었다

21).

즉 해군의 경우 육군이상으로 중앙통제의 성격이 강하고 해군성 직할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엿볼수 있다. 또 스라웨시島의 예를 보면, 직영 혹은 사실상의 직영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해군의 「위안소」에 관한 자료는 아직 거의 조사않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큰 과제의 하나로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종군위안부」의 수송에 대해서 보면, 일본해군은 「종군위안부」를 배로 전지에 보낼 경우에 해군의 군함이나 해군이 관리하는 군용선을 사용하였다. 그 지휘·통제는 해군성, 혹은 각 진수부 (鎮守府) 나 각 함대가 담당하였다.

8. 내무성·조선총독부·대만총독부의 관여

우선 내무성의 관계를 보면, 1938년 2월 23일에 도미따 겐지 (富田健次) 내무성경보 (警保) 국장에서 각 도부현 (道府縣) 지사 앞으로 나온 통첩 「지나 도항부녀의 취급에 관해서」에 의하면 내무성은 「종군위안부」 등의 「주업을 목적으로하는 부녀」의 도항은 화북 (華北) · 화중에 도항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것을 「북인」한다는 지시를 내고 「종군위안부」 송출에 가담하고 있다

22). 당시의 내무대신은 수에쭈구 노부마사 (末次信正) 해군대장이었다.

이 문서는 「주업을 시키기 위한 부녀매매 단속에 관한 국제조약」 「부인 아동의 매매 금지에 관한 국제조약」 위반이 될 것을 두려워하고 강제징집을 방지하자고 한 것이라고 볼수 있지만 같은 통첩이 조선·대만에는 나오지 않았다는 것, 적어도 그런 문서가 발견안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일본국가는 조선·대만에 강제징집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안했다는 방지의무위반을 명시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조선총독부·대만총독부의 관여의 문제에 대해서 말한다면, 전 「위안부」의 증언에서 「종군위안부」의 징집에는 조선·대만의 경찰이 어떤 형태로든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아다실이 조선총독부에서는 경무국이 경찰사무를

통괄하고 지방에서는 도지사가 도경찰부를 통하여 경찰권을 행사하고 각지의 경찰서를 지휘하였다. 대만총독부에서는 경무국이 경찰사무를 통괄하고 지방에서는 주 (州) 지사가 경무부 (1940년부터 경찰무로 개칭) 를 통하여 경찰권을 행사하였다. 거기서 경찰의 관여는 직접관여인가, 불법행위가 있었던 것을

북인하거나 아니면 충분한 방지조치를 취하지 안했다는 것인가, 또는 그 양쪽, 인가현재의 자료상황에서는 유감스럽지만 충분히 확인할 수 없다. 경찰자료·총독부의 조사·공개가 꼭 필요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에서 도항하는 경우 「도항증명서」의 발행은 각 경찰서가 담당하고 있다. 조선·대만의 경우 총독부의 경무국하에 있는 경찰서가 맡아 하고 있다. 여기서 「종군위안부」의 징집이 강제로 진행된 경우 강제라고 알면서 도항증명서를 발행하였다면 위법행위이고, 모르고 발행했다면 직무태만이며, 그 책임은 조선의 경우는 조선총독에, 대만의 경우는 대만총독에 귀착된다. 또 대만의 경우 그것을 감독할 척무대신 (1942년부터는 내무대신) 에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된다. 조선의 경우 척무대신 혹은 내무대신에 책임이 갈 가능성이 있다.

이로부터 조선총독부·대만총독부의 지휘계통이 문제가된다. 이 점에서 본다면 천황은 조선총독·대만총독을 임명하였고 그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다. 또 조선총독·대만총독은 제반의 정무의 실시를 통괄하는 방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내각은 척무대신을 통하여 대만총독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나 내각의 조선총독에 대한 감독권은 명문상의 규정이 아무것도 없었다. 1942년에 척무성이 폐지되어 1942년 11월 1일부터는 내무대신이 대만총독에 대한 감독·지시권을 가지고 조선총독에 대해서는 「사무의 종리상 필요하는 지시를 한다」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23). 사무통리권이 생긴것이다.

이렇게 보다깊이, 조선총독부·대만총독부의 관여의 실태는 자료면에서는 아직 거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그 최대의 원인은 기본적인 자료가 하나도 공개안되어 있다는데 있다. 정부의 이제까지의 조사는 예비조사에 지나지 않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앞으로 정부나 국회에 의한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 한 진상의 해명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9. 「종군위안부」 사역에 관한 책임의 소재

군위안소에 대한 통제감독은 현지군사령부의 후방참모, 병참의 위안담당, 사단·연대의 부관, 현병대등이 담당하고 직영의 위안소는 전면적으로 관리하고 민영의 형식을 차린 군위안소의 경영에 대해서도 엄격히 통제·감독하고 있다. 위안소의 건물은 군이 제공하고 위안소내의 잔잔한 규칙, 이용요금·이용시간, 각부대의 이용일수의 지정, 위생관리의 내용은 군이 결정하였다 (상세하게는 V 참조). 또 군은 누가 위안소를 이용했는가 하는 이용자에 관한 상세한 보고를 업자에게 제출시켰다. 이러한 감독통제의 지시를 내고 책임을 질 입장에

있었던 것은 현지군의 최고지휘관이었다. 그러나 현지군의 불법행위를 현지군의 최고지휘관이 방지안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허용한 육군중앙의 책임이 문제가 될것이다.

註

- 1) 岡部直三郎『岡部直三郎大將의 일기』芙蓉書房, 1982년, p23 稲葉正夫編『岡村寧次大將자료』上卷, (전쟁회상편), 1970년, 原書房, p302.
- 2) 南京戰史편집위원회編『南京戰史자료집』1989년, 偕行社, p211, p220, p280.
- 3) 우와 같음, p411.
- 4) 「군인 군대의 주민에 대한 행위에 관한 주의에 대한 통첩」吉見義明編『從軍慰安婦자료집』(이하『자료집』이라 함) 1992년, 大月書店, p209-211.
- 5) 島田俊彦『關東軍』1965년, 中公新書, 176p. 千田夏光『從軍慰安婦』正篇, 1978년 三一新書, p103-104.
- 6) 대만군사령관에서 육군대신에로의 電報 1942년 3월12일, 육군성부관에서 대만 군참모장에로의 답전 1942년 3월16일, 대만군참모장에서 육군성부관에로의 전 보 1942년 6월13일, 『자료집』p144-146.
- 7) 山口時男일기, 溝部一人편『獨山二(独立山砲兵第二連隊) - 또하나의 전쟁』1983년, 私家版, p58.
- 8) 内務省警保局長「支那渡航婦女의 取扱에 관하여」『자료집』p102-106.
- 9) 『자료집』p105-106.
- 10) 우와 같음, p166.
- 11) 우와 같음, p168.
- 12) 「金原節三業務日誌摘錄」1941년 7월26일
- 13) 外務大臣에서 대만총독부外事部長에로의 전보「남방방면 점령지에 대하여 위 안부도항 에 관하여」, 1942년 1월14일, 『자료집』 p143.
- 14) 『자료집』p144-146.
- 15) 大東亜戰爭관계將兵의 性病처치에 관하여」『자료집』p171-172.
- 16) 「金原節三業務日誌摘錄」1942년 8월 3일 課長会報
- 17) 우와 같음, 1943년 1월 7일 課長会報
- 18) 일본의 戰爭責任資料센터「자료조사제 1 차발표」1993년 7월26일
- 19) 『朝日新聞』1992년 8월30일. 일본정부「소위 종군위안부문제의 조사결과에 대하여」1993년 8월 4일
- 20) 重村実「特要員이라 하는 이름의 부대」『特集文芸春秋』제 1 호, 1955년 2월, p224-225.
- 21) 세레베스民政第二復員班長(海軍司政官)「세레베스民政第二復員班員 復員에 관

- 한 보고」『자료집』p367-375.
- 22) 『자료집』p102-104.
 - 23) 山崎丹照『外地統治機構의 연구』1943년, 高山書院, p78-86.

IV. 징집의 방법

1. 식민지의 경우

식민지에 있어 징집의 방법은 2가지 패턴으로 정리된다. 첫번째는 일본군이 선정한 업자가 자신들이 혹은 주선자에게 의뢰하여 징집하는 경우가 있다. 두 번째는 관헌이 직접 징집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의 경우, 불통제 또는 유괴와 같은 방법으로 업자가 여성을 모았기 때문에 일본 국내에서는 업자가 경찰에 검거되는 사태도 발생했었다. 그래서 육군성은 징집에 관해서는 파견군이 통제하고 징집 업자의 선정을 군이 주도하여 행동하고 징집을 할 때에는 관계지역의 현병, 경찰과 밀접하게 제휴하도록 지시했다 1). 이것은 일본 국내에서의 경우였으나 식민지였던 조선, 대만에서도 같은 방법이 혹은 더욱 강인한 방법이 취해졌다고 추정된다.

(1) 조선인 여성의 징집

(a) 징집의 실례

현재까지 자칭하여 나온 피해 여성의 증언 2)에 의하면 「군인의 일상을 돌봐 주는 일」「준간호사」「공장노동」등으로 가지 않겠냐고 속이고 데려간 경우, 「여자정신대」를 명목으로 권력을 남용하여 속인 경우, 목적을 말하지 않은 채 「돈이 모이는 일이 있다」「예쁜 옷과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다」등의 감언에 의해 권유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이들 중 어떤 형식을 취했든지 본인의 의지가 아니었던 것의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으 수 없다. 그것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본군 「위안부」였었다고 밝히고 있는 한국, 조선 여성의 증언을 예시해 보자.

* [] 내는 연행 년월일 · 연행시의 연령 · 연행 장소

①군인, 현병 그 외에 의한 폭력적 연행

· 군인에 의해 트럭에 실려 연행됨
[1941년, 17세, 중국 데베키친]

……김 학순

- 길거리에서 준사에게 팔을 잡혀 연행됨문 옥주
[1940년, 16세, 만주, 벼어마]
 - 공장에서 도망가다가 길거리에서 군인에게 잡혀 트럭에 실렸다.....강 덕경
* 여자정신대로 부산현불이월 (富山縣不二越) 비행장 공장으로
[1944년, 14세, 부산현]
 - 일본인 경관이 집에 와서 입을 막아 억지로 차에 실었다정 옥순
[1934년, 14세, 함경북도 풍산군]
 - 지주와 일본인 남자가 집에 와서 강제적으로 연행노 현화
[1940년, 18세, 「만주」 모란강]
 - 3명의 일본인에게 잡혀 억지로 연행됨김 군숙
[1938년, 15세, 중국 봉천 (奉天)]
- ② 속아서 연행 [직업사기, 감언, 유괴를 포함]
- 「전지에 가서 나라를 위해 일하지 않겠느냐」송 신도
[1938년, 17세, 중국 무창 (武昌), 한구 (漢口), 악주 (岳州), 그 외 양자강 (揚子江) 중류지역]
 - 「대판 (大阪)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하 순녀
[1941년 또는 1942년, 21·22세, 상해]
 - 「일본의 군수공장에 3년 계약으로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황 금주
[1941년, 20세, 만주 길림 (吉林)]
 - 「공부도 할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는 데에 가게 해 준다」문 필기
[1943년, 18세, 만주]
 - 「같이 가면 배불리 먹을 수 있고 가족을 돌봐 줄 수 있다」이 용수
[1944년, 16세, 대만]

-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데가 있다」이 용녀
[1942년, 16세, 벼어마]
- 「취직하면 정신대에 가지 않아도 된다」최 명순
[1945년, 19세, 일본]
- 「준사가 불러 「좋은 데에 취직 시켜 준다」윤 두리
[1942년, 15세, 부산]
- 「1개월 돈을 벌면 3개월 먹을 수 있는 좋은 일이 있다」장 수월
[1941년, 17세, 중국 치치하루]
- 「일본에 있는 이모한테 데려가 준다」박 복이
[1943년, 17세, 대만]
- 「좋은 일을 소개 시켜 준다」김 영실
[1942년, 18세, 함경북도 경흥군 청학리]
- 「하얼빈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이 선립
[1942년, 24세, 만주 하얼빈]
- 「일본의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을 모집한다」는 이야기에 응모했다김 덕진
[1937년, 17세, 일본]
- 「취직을 알선해 줄 테니 일본에 가자」이 영숙
[1939년, 중국 광동 (廣東)]
- 「방적공장에 취직 시켜 준다」오 오복
[1937년, 16세, 만주]
- 「일본의 견직물 공장에서 일을 하지 않겠느냐」이 순옥
[1938년, 17세, 만주]

· 「일본의 공장에 가지 않겠느냐」
[1936년, 15세, 파라오]

· 「빨래나 심부름을 해 주면 월급을 많이 준다」
[1939년, 22세, 중국 한구]

· 「일본에 가서 1년만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1944년, 18세, 베어마]

· 「좋은 공장에 데려가 준다」
[1929년, 12세, 경상남도 창원군 군수공장]

· 「좋은 일이 있다. 소개해 준다」
[1940년, 18세, 상해, 싱가폴]

· 「정신대에 들어가서 6개월만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정 송명
[1943년, 19세, 베어마]

· 「아버지가 오라고 했다」
[1937년, 12세, 대만]

· 「만주에서 소년가극단을 모집하고 있다. 돈을 벌 수 있다」 ……최 순환
[1942년, 21세, 중국 노국산 (老国山)]

③ 팔려간 경우

· 지주 아이를 포살펴 주다 지주에게 팔렸다
[1941년, 21세, 싱가폴]

· 500원에 팔렸다
[1941년, 19세, 만주 호림 (虎林)]

· 남편이 소개소에 팔았다
[1941년, 23세, 라바울]
* 소개소에서 「위안단의 모집」이라는 이야기를 들어 지원했다.

……이 상옥

……이 득남

……김 대선

……이 경생

……이 현숙

……이 옥분

……최 순환

……윤 경애

……박 복실

……박 순애

(b) 조선인 여성 징집의 역사적 배경

1905년 강제조인을 강요, 강행했던 을미조약이 「체결」된 이후 90년 가까이 지나려고 하는 현재, 그 조약의 무효론은 역사적 사실의 재검증에 불을 붙혔다. 을미조약이 그 검증 여하에서 이렇게까지 중요시되는 것은 조선 식민지 지배 자체의 불법이 판결 받기 때문이다. 전 조약과 같이 1910년의 「한일합방조약」도 강제조인론에 의해 무효론이 뿐만 아니라 조선식민지 지배는 처음부터 「강제 지배」의 양상을 드러내고 있었다.

천황은 「합방」 후 조선통치의 모든 권한을 총독에게 위임하고 조선총독부는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 군사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총독은 제령 (制令)과 총독부령에 의해 조선의 법규를 제정할 수도 있었다. 대부분의 권한을 총독으로 전 내각총리대신 (内閣總理大臣) 인 이토오 히로부미 (伊藤博文) [한국총독], 아베 노부유키 (阿部信行) 등이 기용되어 데라치 마사타케 (寺内正毅), 사이토오 미노루 (斎藤実), 고이소 쿠니아키 (小磯國明) 등은 후에 내각총리대신이 되었다. 또 총독의 대부분이 (사이토오 미노루 외는 육군대장) 육해군대신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1929년에 조선총독부, 대만총독부, 관동청 (關東廳), 화태청 (樺太厅), 남양청 (南洋厅)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척무성 (拓務省)이 신설되었으나 조선총독부는 척무대신의 지휘감독을 거부할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점들만 보아도 조선 지배가 얼마나 군부와 정계의 절대적인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가를 알 수 있다. 이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종군위안부」 정책과 조선 식민지 지배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에 있으며 총인 원수를 확실하게 말하기조차 곤란한 정도로 조선 여성의 징집은 식민지 지배의 실태와 배경을 빼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 책임의 주체의 성질을 파악해 두는 것은 전체상의 해명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하다고 생각한다.

「내선일체」를 표시하여 제정했던 「조선교육령」에는 조선어를 금지, 일본어를 강요하고 조선 고유의 민족 문화나 역사, 언어 교육등은 배제 시키고 있었다. 창씨개명에 의해 일본식 이름을 가요하거나 「황국신민의 맹세」를 낭독 시키거나 신사 참배, 궁성 승배 등 철저한 황민화 통치의 정책이 강구되었다.

한편 경제에 있어서도 「토지 조사」 등에 의해 대부분의 농민이 결과적으로는 전답이나 살림 등 토지를 잃고 일본이나 중국 동북, 시베리아 등으로 이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조선인의 민족성을 말살하고 생활의 기반을 빼앗아 사람들을 궁핍한 생활로 몰아 넣었던 것이다. 「위안부」였었던 여성들의 대부분이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지 「좋은 일거리가 있다」「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다」와 같은 감언이나 속임수에 의해 징집되었던 경우가 많았던 것은 이러한 식민지 지배에 있어서 경제 수탈이라는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 몰려 있던 상태에서 여성의 수탈이 강행되었다. 「위안부」 징집의 강제 정책은 그런 사회적 배경을 기반으로 구성되었던 것이다.

(2) 대만인 여성의 징집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돌입하면서 군위안소의 증설은 급선무가 되었다. 대만에 있어서도 군의 성급한 행동이 보여진다. Ⅲ에서 본 것과 같이 1942년 3월 안도오 토시키치(安藤利吉) 대만군 사령관은 남방총군의 요구로 보루네오에 대만인 「위안부」 50명을 보내기 위해 위안업자의 도항 허가를 도오조오히데키(東条英機) 육군대신에게 신청하였다. 그 전보에는 「……남방총군에서 가능한 한 【보루네오】에 대만인 위안부 50명을 보내라고 요구가 왔기 때문에 육군 밀전(密電) 제632호에 의거해서 현병이 조사, 선정한 결과 좌기와 같이 경영자 3명의 도항 허가를 신청한다」는 문구가 있다 3). 보루네오에 위안소를 설치하기 위해 우선 현병들의 신원 조사에 의해 경영자가 선정되었다. 보루네오로부터의 요청에 의해 그들은 대만인 여성 50명을 「위안부」로서 연행하는 임무가 주어진 것이다.

3개월 후 보루네오에서는 50명으로는 모자라 20명이 더 필요하다고 「위안부」의 추가 요청이 있었다. 이 위안소는 부대 소속으로, 오카(岡) 부대 발급의 허가증을 가진 경영자를 대만에 귀국 시키기 때문에 그 허가증으로 어떻게 통과 시켜 달라는 전보였다. 또 「앞으로 이렇게 소수의 보충, 교대요원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와 같이 임의로 처리할 생각이니 미리 양해해 달라」고 하는 문구도 있었다. 즉 이후도 「위안부」를 보충 또는 교대하는 경우는 임의로 처리하고 싶으니 허락해 달라는 것이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대만 여성을 「위안부」로 남방에 보내는 것에 관해서는 대만군이 도맡아 처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대만군의 「임의 처리」에 육군성은 허가를 하고 있었으나 「위안부 송치」에 관해 대만군이 도맡아 처리했다는 점은 징집의 시스템에서 중요한 성격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점령지의 경우

(1) 중국인 여성의 징집

징집 방법에 있어 중국에서 가장 많았던 것은 일본군의 후방 참모나 현병, 각 부대의 장교, 하사관 등이 직접 징집에 나섰던 경우이다. 이미 Ⅲ에서 말했던 것처럼 후방 참모가 현병을 지휘하거나 그 지방의 권력자에게 명령하여 징집하도록 하였다. 1937년 12월에 만주에서 제10군의 참모가 현병을 지휘하여 중국인을 징집했던 경우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 있던 데라다(寺田) 중좌는 현병을 지도하여 호주(湖洲)에 오락시설을 설치했다. 처음에는 4명이었던 것이 오늘부터 7명이 되었다고 한다. 아직까지 공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모여지지 않아 「서비스」가 안 좋지만 생명은 안전하다는 것과 돈은 꼭 지불하고 혹사 시키지 않는 것이 보급되어 그것을 철저히 지키면 차차 희망자도 모여올 것이고 현병은 100명 정도 모여질 것이라고 밝혔다」 4).

어느 현병부대장의 회상에 의하면 1944년 호남성(湖南省) 보경(宝慶)에는 제116사단의 후방 참모로부터 「종군위안부」의 징집을 부탁 받은 그 부하에게 명령하여 밀정 [일본군 협력자] 을 사용해 중국인 위안부 수십명을 모았다고 한다 5).

이상과 같은 예가 일반적이나 중국에서는 일본군에 의한 강간 사건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고 일본군이 그 지방의 권력자에게 명령하여 「종군위안부」를 징집하는 경우 그 지방의 권력자가 일본군에 의한 박해를 두려워해서 할 수 없이 여성들을 희생자로서 보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 경우 보내졌던 여성은 경제적으로 빈곤한 가정의 여성이었다.

두번째 징집 방법으로 실제 있었다고 생각되는 것은 일본군이 소탕작전을 펼치며 그 지방의 여성을 연행하는 경우이다. 만 애화(万愛花) 씨의 증언에 의하면 1943년 6월에 마을로 소탕작전을 펴러 온 일본병은 굴에 숨어 있던 만씨를 발견, 그대로 부대로 연행하여 감금, 강간하였다. 그 외에도 4명의 여성이 연행되어 그와 같은 취급을 당했다 6). 만씨는 두번 도망을 쳤으나 결국 잡혔다. 이것은 노골적인 폭력에 의한 연행이다.

징집된 여성들은 해외의 전장에 연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 당시 군위안소 업자의 증언에 의하면 1942년 베어마에 군위안소를 개설하기 위해 군의 명령으로 중국인 위안부 30명을 사 모아서 관동에서 베어마로 데리고 갔었다고 말했다 7). 전선 확대에 따라 동남아시아에서 군위안소의 설치가 급선무가 되었을 때 군은 중국에 있던 일본인들에게 위안소 경영을 제기했던

것이다. 신원 조사에 합격한 사람은 경영자로서 군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그들은 군의 명령을 받아 계약금을 주고 여성을 모아 군이 지정한 기일에 항구에 집합해 군용선으로 바다를 건넜던 것이다.

(2) 동남아시아,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징집

일본군은 아시아·태평양전쟁의 개전 전부터 점령지에서의 위안소 설치를 검토하고 있었다. 육군성은 후카다(深田) 군의 소좌를 자와에 보내 「위생 상황」을 조사 시켰다. 후카다군의는 1941년 7월 26일 육군성 회의에서 보고를 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시적이라도 강간을 하여 일본군의 기강에 불신을 가지지 않도록 엄중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원주민은 생활난으로 인해 매춘 행위를 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반돈이나 그 밖의 성병이 많으므로 촌장에게 할당하여 엄중한 매독(성병) 검사의 실시하에 위안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1). 즉 일본병이 그 지방 여성을 강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촌장에게 할당하여 사실상 강제적으로 위안부를 모집 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1941년 12월 8일 아시아·태평양전쟁이 시작되며 동남아시아 각지에 침공하고 있던 각군의 병참이 위안부 모집과 위안소 설치를 담당하였다. 병참은 전투 부대에 군수품을 공급하는 부대이다.

말레이지아 반도에서는 개전 직후인 1942년 1월 2일에 제25군 병참 장교 이하 3명이 방콕 출장을 명령 받고 그 곳에서 타이인 여성을 모아 데려와 하자이와 싱고라[타이령]에 위안소를 설치하였다 2). 전투 부대와 함께 먼저 가 있던 병참 지부는 1941년 12월 19일에 알로스타[영국령의 마라야]에 들어가 바로 위안소를 설치했다. 여기에는 수송선으로 데려온 조선인이나 현지에서 징집되었던 말레이지아인, 인도인, 중국인이 「위안부」로서 배치되었다 3).

일본군이 싱가폴을 함락 시켜 마라야 전지역을 제압한 것이 1942년 2월 15일이며 그 2월부터 4월경에 걸쳐 각지의 일본군 주둔지에 위안소가 설치된 것이 역사 자료로부터 판명되고 있다.

점령 후 군정 조직이 정비되어 가며 위안소의 관할은 병참으로부터 군정기관으로 넘겨졌다. 예를 들어 마라야에는 마라군정감(馬來軍政監) [군정의 최고 책임자]가 「위안 시설 및 여관 영업 취체 규정」 4) 등을 제정해 위안부 고용을 비롯하여 위안부나 위안소의 관리, 감독을 했던 것이다. 필리핀에서도 같은 상황이였다.

그러나 일본군의 말단에서는 각 부대가 제각기 나름대로 위안부를 징집하

여 위안소를 설치한 경우도 많았으며 통제가 되어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징집 방법의 실태는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조선인을 조선 반도로부터 연행해 온 경우이다.

둘째 현지에 잔류하고 있던 일본인 창부 [가라유키상]에게 위안부 모집을 위탁한 경우이다. 쿠알라룸프에서 위안소 설치를 담당했던 일본군인의 증언에 의하면 5) 잔류 일본인 여성 14명을 모아 창부 경험자 12명에게 위안부 모집과 위안소 경영을 위탁하였고 미경험자 2명에게 대병용 식당의 경영을 위탁하였다. 창부가 모집되어 온 경우도 많았다고 보여지나 위안부의 역할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모집하였는지는 분명치 않으며 속아서 징집된 가능성성이 많다.

세번째는 현지의 주민 조직의 간부에게 위안부 모집을 명령한 경우이다. 마라야의 구알라피라에서는 현지의 주민 조직 치안 유지회의 회장 대리 [중국인]이 주둔 부대장 [보병 제11연대 제7중대장]에게 불려와 여성을 모으도록 하는 것을 명령 받았다. 그 당시 각지에서 일본군에 의해 중국계 주민 학살이 빈발하고 있었으며 회장 대리는 명령을 거부하면 죽음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무서워하여 미명인 등 18명의 여성을 모아와 일본군에게 건너 주었다. 위안부가 된 여성들은 외출도 허가되지 않아 자주 회장 대리에게 집에 돌아가고 싶다고 울면서 호소했던 것으로 보아 일본군에게 강제된 간부들이 속여서 데려왔다고 생각할 수 있다 6).

인도네시아에서도 경찰관이나 마을 대표들에게 위안부를 모으도록 했던 것이 보고되어 있다 7). 앞에서 소개했던 군의 소좌의 보고에도 촌장에게 모으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런 일은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었음을 추정된다.

네번째는 좋은 일이 있다 등의 말로 속여서 강간한 후 위안부를 시킨 경우다. 징집의 형태로는 사기를 친 것이나 결국은 위안부가 되는 것을 강요했던 경우이다. 일본군이 인도네시아 수라웨시 섬의 여성에게 사무소의 교환수로서 일을 하라고 하였고 그 다음에 호텔의 웨이트레슬을 하라고 얘기했다. 거기서 장교에게 강간당한 후 위안소로 옮겨져 외출도 못한 채 위안부로 강요당했다 8).

다섯번째는 폭력적인 납치로서 위안부로 징집된 경우이다. 일본군이 집으로 쳐들어와 폭력으로 젊은 여성을 납치하여 강간을 한 후 위안부로 했던 예가 상당수 보고되고 있다. 현재 동경에서 소송을 하고 있는 필리핀의 위안부 18명은 모두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이 소송에 의하면 예를 들어 마리아·로자·루나·핸슨씨는 마차를 끌고 통해하던 중 일본군에게 불려 세워져 그

대로 연행되어 위안부로 강요당했다. 토마사·사리노구씨는 집에서 자다가 일본군이 밀고 들어와 납치당했다. 그에 저항한 아버지는 군도에 짚려 살해당했다. 그녀는 여러번 반복해 강간을 당했다. 사비나·휘레가스씨의 경우는 마을의 남성들이 살해당하는 한편 젊은 여성들은 연행되어 강간당한 후 위안부로 되어졌다고 한다.

마라야에서 최근 밝혀진 위안부의 경우도 집에 있을 때 일본군에게 납치되어 강간당한 뒤 위안부로서 강요당했다⁹⁾. 앞에서 소개했던, 쿠알라룸프에서 위안소 설치에 배당되었던 병사는 자와의 위안부에게서 그녀가 싱가폴의 거리 위안소에 대해서 갑자기 트럭에 태워져 연행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고 있었을 때 갑자기 트럭에 태워져 연행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또 싱가폴에 있어서는 군이 시민을 무차별 연행하여 노무자로 일을 시키는 것에 대해 군정 기관의 경찰이 군에 항의하고 있었다고 군정기관의 일본인 직원이 증언하고 있다¹⁰⁾.

위안부로 강요당했던 여성은 조선으로부터 연행된 여성을 제외하면 일본군의 점령지에 사는 각지의 주민이였고 대다수의 민족에 이르고 있다. 다민족 지역인 마라야에도 중국인이 많으나 그 이외에 인도인, 말레이지아인, 같은 아시아계의 혼혈, 유라시아 사람 등이 위안부로 강요당했다.

동남아시아·태평양의 점령지에 있어서 위안부 징집의 특징은 첫째 개전 이전부터 군 중앙에서 준비되어 조직적으로 위안소를 설치하여 위안부를 모집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둘째 점령지 주민들에 가한 일련의 잔혹 행위 가운데 위안부가 징집되었다는 것이다. 필리핀에서는 게릴라 초벌이라는 명목하에 주민 학살이 행하여진 가운데 남자들을 학살하면서 젊은 여성을 강간하여 위안부로 했던 경우가 많았다. 마라야에서도 중국계 주민 학살과 병행하여 위안부 징집이 행하여졌다. 일본군의 점령지에서는 일본군의 폭력이 노골적으로 가해지고 있었던 것이 특징이다.

- (1) 긴바라 세츠조오 (金原節三) [육군성 의무국 의사과장] 「육군성 업무 일지 적록」 1941년 7월 26일 [방위청 방위 연구소 도서관 소장], 이 일지의 분석은 요시미 요시아키 (吉見義明) 「육군 중앙과 「종군위안부」 정책」 『계간 전쟁 책임 연구』 창간호, 1993년 9월 참조.
- (2) 그 당시 일본병의 증언 [하야시 히로시 (林博史) 「마레 반도에 있어서 일본군 위안소에 대하여」 『관동학원대학 경제학부 일반교육론집』 제15호, 1993년 7월]

- (3) 타케모리 가즈오 (竹森一男) [그 당시 병참 근무병] 『병사의 현대사』 시사통신사, 1973년, p.148~150.
- (4) 마래군정감부 (馬來軍政監部) 『군정 규정집』 제3집, 1943년 11월 11일, 소수 [방위청 방위연구소 도서관 소장]
- (5) 하야시 히로시 전개 논문 참조.
- (6) 하야시 히로시 「마레 반도의 일본군 위안소」 『세계』 1993년 3월.
- (7) 화 청도 『해군 특별 경찰대』 태평출판사, 1975년, Tempo 8 Aug. 1992 등 참조.
- (8) Tempo 8 Aug. 1992.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오오무라 테츠오 (大村哲夫) 「「현지 조달」 된 여성들—인도네시아의 「위안부」 문제 각서」 『세계』 1993년 7월 참조.
- (9) New Straits Times, 16 May 1993.
- (10) 싱가폴 시민회 『소남 (昭南) 특별 시시—전시하의 싱가폴』 일본 싱가폴 협회, 1986년, p.106~107.

(3) 일본인 여성의 모집

일본인 「위안부」는 위안소 정책 초기에 진출하고 있었다. 그 대다수는 일본의 유곽 (遊廓)에 있었던 창부나 기생들이었다. 특히 기생은 장교 전문의 「위안부」로 전지에 진출한 요정 (料亭)에 배치되며 실질적으로 「위안부」로서 존재했는데 일본인 여성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위안부」 중에도 보수, 대우에 있어서 특별했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언급은 다른 장에서 말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일본인 여성은 어떻게 전지에 보냈는가에 문제점을 좁히기로 한다.

현재까지 일본인 여성으로 「위안부」 였다고 공적으로 밝힌 사람은 고인 시로타 스즈코 (城田すず子) 씨 뿐이다. 그녀의 경우도 유곽에 팔렸다가 거기서 대만의 위안소로 보내졌다. 일단 일본에 귀국했지만 곧 해군의 「특요원 (特要員)」 [=「위안부」] 모집에 응하여 남방의 파라오에 건너가 패전까지 공습 등 위험을 느끼면서 위안소에서 생활을 했다.

시로타씨와 같은 유곽의 여성이나 모집에 응하거나 혹은 가난한 집의 딸이 위안소에 팔려간 경우도 있다.

일본 국내에도 위안소가 있었다. 치바현 기사라즈 (千葉県 木更津)에 있었던 제2해군 항공창 소속의 위안소에 있었던 어떤 일본인 여성의 경우에는 계약금 2,000엔을 빌려 받고 「위안부」가 되었다. 그녀의 경우는 생계를 도와

주기 위해 가족에도 비밀로 한 채 자기 의지로 「위안부」가 되었다.

일본인 여성의 경우는 유곽이나 요정에 있었던 여성이 전지의 위안소에 간 사람, 계약금으로 팔려간 사람, 또 「모집」에 응모하여 「위안부」가 된 사람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일본인 여성으로 강제 징용당했다는 증언은 아직까지 없었다. 전반적으로 일본인 「위안부」에 관한 조사와 연구는 부족한 현실이라는 것을 부인해 둔다.

- (1) 육군성 부관 통첩 「군위안소 종업부 등 모집에 관한 건」, 전계『종군 위안부자료집』 pp. 105~106
- (2) 한국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정신대 연구회 편 『증언 강제 연행된 조선인 위안부들』 1993년, 명석서점(明石書店) 동경.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 점령 피해 조사위원회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종군위안부」 범죄 사건의 진상조사 중간보고』 1993년, 평양. 가와다 후미코(川田文子) 『황군 위안소로 여자들』 1993년, 죽마서방(筑麻書房), 동경.
- (3) 대만군 「남방 도항자 파견에 관한 건」 1942년 3월, 대만군 참모장 「대전(台電) 제935호」 1942년 6월 13일 『종군위안부자료집』 pp. 144~146.
- (4) 제10군 참모 야마자키 마사오(山崎正男) 소좌의 일기, 전계『남경전사 자료집』 p. 273~278.
- (5) 야마다 타다시(山田定) 『현병 일기』 1975년, 수루가다이서방(駿河台書房), 동경, p. 273~278.
- (6) The Executive Committee International Public Hearing, War Victimization and Japan : International Public Hearing Report. 1993. Toho Shuppan, Osaka, pp. 68~70.
- (7) 전계 니시노(西野) 『종군위안부와 15년 전쟁』 pp. 47~48.
- (X) 니시노 루미코(西野留美子) 『종군위안부-그 당시 병사들의 증언』 1992년, 석명서점, pp. 109~112.

V. 군위안소에 있어서의 생활실태

15년전쟁시기 일본군에 의한 식민지 및 점령지여성에 대한 성유린은 다음과 같이 대별할 수 있을 것이다.

- (1) 남경(南京) 학살때에 상징되듯이 살륙을 동반하는 강간, 윤간.
- (2) 제도로서 확립된 위안소에 있어서의 성유린.
- (3) 점령지에 있어서 각부대, 장교등이 현지여성을 주둔지내 건물이나 장교숙소에 감금하여 계속적으로 강간, 윤간을 되풀이 한 예.

여기에서는 제도로서 확립된 위안소, 즉 (2)의 경우 여성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는가 그 실태를 보고한다.

1. 위안소의 형태

위안소에는 ①군직영, ②업자를 개재시키면서 군이 감독, 통제하는 군전용, ③기존의 민간매춘집등을 군용으로 지정한 것, 등이 있었다. ①②는 군인, 군속만이 이용하는 순수한 군위안소이다. ③은 군에게 특별한 편의를 제공하지만 민간인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또 군위안소에는 도시나 병참기지 가까이에 개설되는 위안소와 특정부대에 전속하는 위안소가 있었다. 부대전속 위안소는 부대가 이동할 때 그에 따라 이동한다. 도시나 병참기지 부근에 있는 위안소에서도 군의 요청에 의하여 위안부를 다른 지역에 파견할 경우가 있었다.

2. 위안소의 명칭

군자료를 보면 위안소는 「군위안소」「군인클럽」「군인오픈소」「후방시설」 등으로 기술되고 있다. 전투가 벌어이는 전선의 후방에 놓여진 병참기지를 후방 시설이라고 불렀는데, 기지주변에 있는 위안소도 또한 후방시설이라고 불리었던 것이다.

군인들은 위안소를 「빼야(屋)」, 「위안부」를 「빼」라고 불렀다. 조선인 「위안부」는 朝鮮卑, 중국인 「위안부」는 支那卑, 滿卑, 일본인 「위안부」는 日卑라고 불렀다. 빼는 영어의 "Prostitute"에 유래한다는 설도 있으나 정확하게는 중국어로서 여성의 성기를 의미하는 말이다. 이 빼라는 속칭에 군인들측에서 본 「위안부」의 위치가 상징적으로 나타났다.

3. 위안소의 건물

군이 접수한 건물을 위안소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민가, 상점, 식당등 개인소유였던 가옥, 혹은 학교, 교회, 공민관과 같은 곤적인 건물도 위안소로

이용되었다. 목공이나 미장이 출신 병사들이 큰 방에는 판자등으로 칸막이를 하 고 출입구에는 커튼이나 담요를 처놓은 등 간단한 개조를 하였다.

오키나와의 북비행장 제5 6 비행장대대(飛行場大隊) 파견 시게노부(重信) 반의 진중일지에는 민가의 각방에 칸막이를 하여 위안소로 개조한 「군인클럽내부 개축 설계 약도」가 첨부되어 있다 1).

극히 일부에 한정되리라고 보지만 새로 건설된 예도 있었다. 역시 오키나와에 주둔한 요새건축근무 제6 중대진중일지 1944년 5월 24일 2)에는 다음과 같은 기술이 있다.

「중대는 내일 25일, 건축중인 병사숙소를 물품판매소로 개축하고 새로 위안소 건축작업을 맡아 할것」

「위안부」의 방 크기는 겨우 5~7 평방메터이고 침대나 침구를 넣으면 나머지는 얼마 남지 않았다.

막사가 위안소로 이용된 예도 있다 3). 또 굴(壕)이나 참호(塹壕) 등 말그대로 전장에서도 군인들은 「위안부」들에게 「위안」을 강요했다.

4. 위안소 이용규정

군은 위안소를 개설함에 있어서 장병, 업자, 「위안부」를 대상으로 한 이용 규정을 정했다.

「군인클럽 이용규정」 6), 「외출 및 군인클럽에 관한 규정」 7), 「위안규정」 8) 등이 그것이다. 이들에 공통되는 내용은 우선 이용자는 군인, 군속에 한할 것, 성병예방을 위해 위생삿ку를 사용할 것, 위안소내에서의 음주의 금지, 이용시간, 요금규정, 그리고 군의 등에 의한 성병검사의 실시 등이다.

이용시한 및 요금은 계급에 따라 구별되었다. 대개 병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사관, 군속은 전날부터 밤 8시쯤까지, 그 후가 장교들의 이용시간이었다. 이것을 보면 병사는 휴일에만 이용할 수 있고 하사관, 군속, 장교는 군무가 마치면 매일이라도 이용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교에 관해서는 속박도 인정되었던 예가 많다.

「위안부」에게는 「洗」를 확실히 실행 할 것이 의무화되어 있었다. 성병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매주 한번씩 행하여지는 성병검사의 결과 성병에 걸렸음이 명백해진 경우 「위안부」의 접객이 금지되었다.

5. 위안부의 구속상태

위안소는 일본국내 혹은 당시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 대만에도 설치되었다. 그러나 그 대다수는 일본군의 침략지에 설치되었다. 민족, 언어, 풍속, 습관이 다른 낯서른 땅에 「위안부」로 되기를 강요당한 소녀들은 연행된 것이다. 더

우기 그러한 지역은 대단히 정세가 불안정한 소위 「전지」였다. 전황의 변화에 따라서는 언제라도 전장으로 될 만한 지역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연행된 소녀들이 위안소에서 도망가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다. 게다가 군과 업자들이 「위안부」의 신변을 구속하고 도망을 방지하는데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필리핀 島 군정감부(軍政監部) 비사야지부 이로이로 출장소의 위안소규정 9)에서는 「五. 위안소 경영자는 좌기 사항을 엄수할 것」이라고 하면서 「5. 위안부의 외출을 엄중 단속」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六. 위안소를 이용할 자는 좌기 사항을 엄수할 것」이라고 하면서 「5. 필리핀 島 군정감부 비사야지부 이로이로 출장소의 허가없이 위안부를 데리고 나가는 것은 금한다」고 규정했으며 「7. 위안부의 산책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전 10시까지 하고 기타에 관해서는 필리핀 島 군정감부 이로이로 출장소장의 허가를 받을 것. 단 산책구역은 별표1에 따른다」라고 해서 산책할 수 있는 구역도 위안소주변에 있는 공원에 한정하고 있다.

오키나와의 도가시끼島에 연행된 배봉기할머니의 증언에 의하면 해안선 가까이에 있었던 위안소에서 주민들이 모여사는 곳 방향으로 가는 것은 금지돼 있었으며 산책은 해안선방향으로 한정돼 있었다 10). 중국의 위안소에 7년간 있었던 송신도할머니의 경우 무창(武昌)의 위안소에서는 한달에 한번밖에 없는 휴일에도 외출이 허가 안되었다. 밖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작전지를 향하는, 혹은 거기서 돌아온 장병들을 바래고나 마중할 때, 그리고 병원으로 위문 갈 때 뿐이었다.

이처럼 군이 「위안부」의 행동범위를 위안소에 극히 가까운 장소로 한정한 주된 이유는 도망방지와 더불어 방첩상의 관점이었다고 본다.

본래 일본군장병들이 침략지의 매춘집등에 출입하여 거기서부터 군의 정보가 흘러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위안소 설치 목적의 하나였던 것이다. 군은 장병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은 「위안부」들로 부터 비밀이 흘러 나가는 것을 우려하여 「위안부」들의 행동을 제한하고 지역주민들로 부터 「위안부」들을 격리시켰다. 전술한 위안소규정에서는 六의 1 속에서 「방첩의 절대 엄수」를 이용자들에게 의무화하고 있다.

또 예컨대 중국의 한구(漢口), 적경리(積慶里) 등 위안소가 수십이나 모여 있는 지구에서는 거리 출입구에 경비병이 상주하여 11) 현병이 순회하면서 단속하였다 12).

업자가 군의 감독하에 위안소를 운영했다는 사실은 위안소규정을 보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군이 권력과 무력으로 「위안부」의 신변을 구속하고 「위안」을 강요했다고 한다면 업자는 많은 경우 전차금(前借金)과 폭력으로

그일을 실행했다.

장병들의 성병예방, 또 침략지 주민에 대한 강간방지책이 요구되었을 때 너 무나 쉽게 위안소제도가 발안된 배경에는 여자의 성의 매매를 공허해온 오랜 역사가 있다. 공창제도하에서 가난한 집의 처녀를 유곽에 몰아낸 제겐 [女銜] 매춘부를 전문으로 하는 주선인]이나 유곽의 주인등의 인재가 위안소제도 실시과정에서 편입된 흔적이 있다. 그 결과 공창제도하의 여성의 신면구속 방법이 위안소에서도 응용된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전차금제도였다.

그리나 공창제도에서는 적어도 업자는 전차금을 치러 그 금액에 따라 일하는 기간을 결정했다. 그런데 위안소업자는 가동지에로의 수송, 위안소로 사용하는 건물의 접수, 건조등 많은 것을 군이 방조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징집지로 부터 위안소로 가는데 소용한 비용을 여자들의 빚으로 했던 것이다 13). 여자들은 한푼의 돈도 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에는 고액의 빚이 가해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 위에 고율의 이자가 부가되고, 정해진 휴일외에 쉬면 그 날의 뒷을 빚으로 계산하고 또 웃이나 화장품들을 일반판매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도록 시켜 그것도 빚으로 하는 등 악질한 구조속에서 빚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자유로이 안되는 듯한 의식을 여자들에 게 심었던 것이다.

위안소 이용규정에는 예외 없이 계급별 요금이 명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전「위안부」들이 업자가 사이에 끼 경우에도 돈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업자들의 교묘한 착취구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 많은 수의 위안소에서 일본말밖에 못쓰도록 다른 말의 사용을 금지했는데, 이것은 식민지 및 신탁통치령의 사람들에게 일본말을 강요한 정책의 일환과 동시에 방첩, 도망방지책으로서 위안소에서는 특히 유의된 것이다.

6. 위안부의 대우

(1) 노동시간

앞에서 본 필리핀군 군정감부 비사야지부 이로이로 출장소 위안소규정에 의하면 영업시간은 병사가 9시부터 16시, 하사관, 군속이 16시부터 19시, 전습사관, 장교가 19시부터 24시라고 되어있다. 병사의 외출날에는 「위안부」는 아침 9시부터 24시까지 대응하지 않으면 안되는 셈이다. 장교가 위안소를 밤새도록 이용할 경우도 있었다.

(2) 휴일

山3475부대의 내무규정증 「군인클럽에 관한 규정」 14) 에는 「매달 8일은 휴업으로 한다」고 써여져있다. 이로부터 휴일이 한달에 한번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송신도할머니도 증언속에서 중국 무창의 위안소에서는 휴일이 한달에 한번이었다고 말했다.

(3) 보수

19명의 「위안부」들의 체험을 적은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한국청신대문체대책협의회, 정신대연구회편)에 의하면 「위안」의 대가로서 돈이나 군표를 받은 것은 3명만이고 7명이 장병들로부터 받은 요금을 업자에게 주었으나 한번도 청산해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고 4명은 요금의 관리를 업자가 직접 했다고 증언, 나머지 5명은 요금에 대해 일체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송신도할머니의 경우 조선에서 중국의 무창으로 연행되는 사이에 걸린 식비, 「일」을 위한 양복 기타 비용이 모두 빚으로 되고 빚이 남아 있는 기간은 요금의 4 할을 본인이 나머지 6 할을 업자가 받도록 계산되었다. 그러나 그 4 할을 실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액 빚을 돌리는데 충당되었다. 여러가지 명목으로 빚이 들씌어져 7년간의 위안소생활중 빚이 없었던 것은 마지막 시기에 불과하다. 빚이 없어진 후에는 업자와 5 할씩 돈을 나누게 되었으나 국방헌금이란 명목으로 나라에 바치고 있다는 이유로 결국 약간의 보수를 받았을 뿐이었다.

7. 「위안」의 강요

황금주할머니는 「위안」을 강요당한 첫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트럭이 우리를 내려놓은 곳은 민가라고는 전혀 업고 첨첩이 군대 막사만 보이는 끝없이 넓은 군부대 속이었다. 우리 일행은 고야 [小屋] 오두막집]라고 부르는 그 많은 막사의 하나에 집을 풀고 그날 저녁 잠을 잤다.
[생략] 그 다음날 군인들이 와서 한명씩 데리고 나갔다. 나도 한 군인에게 끌려 장교 방으로 갔다. 장교는 침대 옆에 있다가 가까이 오라고 하며 끌어안으려고 했다. 내가 안된다고 하니까 왜 그러느냐고 했다. “나는 세탁이 나 청소같은 일이면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일은 필요없다고 하며 다시 끌어안으려고 했다. 그래도 뿌리치니 양쪽을 후려 갈겼다. 내가 빌면서 살려 달라하니 그러지 말고 하라는 데로 하라고 했다. 내가 죽어도 그런 짓은 못한다고 했다고 장교는 치마를 세게 잡아당겨서 치마는 어깨걸이만 남고 쪽 뜯어졌다. 그때 나는 새까만 치마에 흰 저고리를 입고 머리를 길게 땋고 있었다. 치마가뜯겨져 나가 속곳바람이 된 나는 그래도 못하겠다고 하며 끊어 앉았다. 그는 땋은 머리를 잡아 일으켜 세우고 칼로 속곳을 찢었다. 이때 나는 놀래 기절하고 말았다. 얼마쯤 후에 깨어나니 장교는 저쪽에 앉아 땀을 쟁으며 웃을 입고 있었다. 졸병이 와서 나를 다시 데려갔다. 나는

속곳을 쪽아 붙잡고 치마를 두르고 올면서 따라 나갔다. 아파서 걸음도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다」¹⁵⁾

황금주할머니는 처음의 보름정도 장교들만 상대를 했다. 황할머니 뿐만 아니라 성경험이 없는 처녀를 위안소로 연행한 후장교를 상대하게하는 것이 관습으로 되어 있었다.

필리핀의 마수바태섬 경비대 군인클럽 규정의 「六. 기타」에는 위안소로 가는 병사의 「복장은 略裝이면서 칼을 차고 계에트르를 잡을것」이라고 써여져 있다. 다른 위안소규정에도 외출시 복장은 군장(軍裝)으로 하라는 규정¹⁷⁾이 있다. 군인은 위안소에 갈때에도 허리에 대검을 차고갔던 것이다.

송신도할머니는 병참기지가 있는 무창에 통과부대가 숙영하는 날에는 2층에 있었던 방에서 수많은 병사의 상대를 하면서도 대검이 부딪치는 소리가 아래 층에서부터 끊임없이 들리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일본말을 알아듣지 못했던 것 이 무엇보다도 괴로웠다고 했다. 몸이 아파서 군인의 요구에 응할 수 없을 때에도 일본말로 표현하지 못해 끓어 앉았다. 그럴때면 상대가 칼을 뽑아내지 않을가고 두려웠다고 한다. 실제 군인들은 사소한 이유로 빈번히 칼을 뽑아내곤 하였다¹⁸⁾.

비슷한 증언을 문필기할머니도 하고 있다.

「위안부생활을 하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 어떤 군인은 자기가 하고싶은 대로 받아주지 않는다고 술을 먹고 와서 칼을 뽑아들고 행패를 부렸다. 또 어떤 군인은 술 먹고 위안소에 들어와 칼을 다다미에 꽂아놓고 성행위를 하는 사람이 많아 방바닥에 칼자국이 많이 있었다. 이것은 자기하고 평대로 실컷하게 해달라는 위협이었다. 그러다 안되면 칼을 가지고 덤벼 드는데 이럴 때는 빨리 피하거나 혹은 누가 찾는다고 거짓말을 시켜 내보내곤했다」¹⁹⁾

위안소에서의 음주는 금지되어 있었다. 「현저하게 주기를 띤 자」의 이용도 금지되어 있다 [독립보영제 13여단 나카야마(中山) 경비대 군인클럽이용규정²⁰⁾], 또 「술에 취해서 폭행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것」 [마수바태섬 경비대 군인클럽규정]²¹⁾, 「위안부 및 유곽의 주인(樓主)에 대해서 폭행, 협박행위가 없도록 할것」 [필리핀섬 군정감부 비사야지부 이로이로출장소 위안소규정]²²⁾ 등에

로 지켜지지 않았던 사실이 군이 낸 문서를 통해서도 명백하다.

「외출시 술에 취해 위안소로 도착, 안으로 들어가 위안부를 구타 혹은 칼을 뽑아내어 간판을 파괴하려 함」 [소화 17년 2월 군인, 군속비행표 중지나 파견 헌병대 사령부]²³⁾.

이표의 1941년 11월을 보면 비행총수는 34건이고 그중 10건이 위

안소내에서의 폭행 기타이다. 헌병대에 신고된 것 만으로 이 수자가 되었으므로 실지로는 그 몇배나 되는 비행이 위안소에서 벌어졌다고 능히 상상할수 있을 것이다.

상해(上海) 사변부터 남경(南京) 접경에 걸쳐 중국여성들을 강간, 윤간한 끝에 살해하는 등의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남으로써 반일감정이 고조되고 접경지행 정에 지장이 나타나 위안소제도가 그러한 강간을 방지하는 대책으로서 설치되어 갔던 경위가 있는데 위안소에서도 일상적으로 파상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보면 접경지여성에 대한 강간폭행이 위안소여성들에게로 그 대상을 이행시켰을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군인의 폭력때문에 죽은 「위안부」도 적지 않았다.

예컨데 송신도할머니에 의하면 같은 위안소에 있은 한 「위안부」가 적리(赤痢)에 걸렸는데 아직 그 병이 적리라고는 몰랐을때 아파서 누워자고 있었다. 거이에 단골이었던 병사가 와서 왜 응하지 않는가고 화를 내였다. 그래도 그 「위안부」가 거부하자 그 병사는 의자를 내던졌다. 그 의자가 옆구리에 부딪쳐 내장파리를 이르켰는지 배가 이상하게 불어올랐다. 적리에 걸리고 있다는 것도 판명되어 판자집에 격리되었는데 얼마없이 죽었다고 한다.

8. 하루에 강요당한 「위안」의 회수

위안소가 배치된 장소나 시기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적어도 하루에 여러번 많은 날에는 수십번 「위안」을 강요당했다. 그 괴로움에 대해서 김덕진힐머니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나는 아래에서 피가 흐르고 소변을 못보는 병 [방광염인 듯 함]에 걸려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았다. 다른 여자들 중에도 밑이 바늘 들어갈 구멍도 없이 홀딱 뒤집어지도록 붓고 피가 나는 사람이 많았다. [생략] 나는 성병은 없었지만 최근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니 어려서 하도 많이 자궁을 사용하여 자궁이 비뚤어졌다고 한다」

이영숙할머니도 비슷한 증언을 하고 있다.

「나는 군인을 많이 상대해서 밑이 통통 붓곤했다. 밑이 그렇게 되면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갈때는 아랫배가 터져나올 것같이 아팠다. [중략] 나는 밑이 자꾸 부어서 일년에 서너번 병원에 입원을 했다」²⁵⁾.

1년이 지나자 이할머니는 자기 몸은 자기가 돌보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어 검사를 할 때는 소금물로 깨끗이 닦은 후에 검사대에 올라가야 하는데 닦지 않고 올라가서 이상이 있는 것처럼 위장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면 당분간 군인을 상대하지 않아도 좋기 때문이었다.

앞에서 본 중지나파견헌병대 사령부의 군인, 군속비행표에는 다음과 같은 사

건이 적혀있다.

「위안부의 의뢰를 받아 “모르하네” 기타의 군용약품을 가져가려고 함」 다른 군자료에도 비슷한 사건이 가끔 기재되어 있다. 「위안부」는 모르하네를 전통체로서 필요했던 것이다.

9. 성병검사

위안소유정에는 예외없이 「위안부」에 대한 성병검사의 실시가 명기되어 있다. 위안소제도는 군인, 군속에 대한 성병의 만연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입안된다. 그러니까 당연한 일이다. 주에 한번으로 규정한 예가 많지만 10일에 한번으로 정한 예도 있다.

성병검사는 전지에서는 군의와 위생병이 실시하였다. 도시나 일본국내에서는 병원, 부인과의원에서 할 경우도 있었다. 부대에 소속한 경우, 혹은 출장 때문에 군의가 없는 소규모 부대에 종준할 경우등에는 위생병이 검사를 했는데 위생병도 없을 때에는 고참에 「위안부」가 한 예도 있었다.

1942년 12월부터 1943년 2월까지의 제15사단군의부의 위생업무요보(要報) 26)에 남경을 비롯한 4~6개도시 위안소의 여성들에 대한 성병검사의 상황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검사회수는 12월이 3~5번, 1월이 2~4번, 2월이 3~4번이라고 되어 있다. 도시별로 본다면 남경, 진강이 매주 한번 실시하고 있다. 무호(無湖), 금단(金壇)에서는 매주 (鎮江)은 매주 한번 실시하고 있다. 무호(無湖), 금단(金壇)에서는 한번씩 실시하고 있는 위안소와, 2주일에 한번, 혹은 10일에 한번 실시하는 위안소가 있다. 그런데 검사를 한 하루 평균의 인원수를 보면 70% 이상이 위안소가 있다. 그런데 위안부는 주에 한번씩 실시한 위안소가 있는 것 남경의 「위안부」이다. 딴 도시에서도 주에 한번씩 실시한 위안소가 있는 것으로부터 보아 2주일, 혹은 10일에 한번씩 실시한 위안소가 오히려 예외적이라고 짐작된다.

불합격자수는 12월이 568명중 71명이며 12.5%, 1월이 540명중 84명으로서 15.6%, 2월이 628명중 143명으로서 22.9%이다. 위안소에 연행된 여성들도 처음에 성병검사를 받아 성병에 걸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한 후에 영업이 허가되었다. 따라서 이 불합격자의 수는 군인들이 「위안부」로 된 여성들에게 성병을 엄금 수를 나타내고 있다. 군인이 성병을 엄금 「위안부」로부터 수많은 군인들에게 또다시 성병이 전선해간다는 사태도 응당히 일어났다. 이에 대해서 고오노다이(国府台) 육군병원부속군의증위였던 하야오 도라오(早尾 雄)가 「전장에 있어서의 특수현상과 그 대책」 속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성병이 지나인으로부터 엄겨지지 않도록 위안소를 설치하여 内地, 内鮮人을 창기로서 사용했는데 오히려 그녀들이 성병을 전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27)

계속해서 하야오군인은 「군당국은 군인의 성욕은 억누르지 못한다고 해서 지나부인을 강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위안소를 설치했다. 그러나 강간은 계속 비번히 일어나 지나양민은 일본국민을 보면 반드시 두려워 하였다」라고 쓰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군인의 성욕은 억누르지 못하니까 식민지 및 점령지 여성들의 성을 유린해도 좋다고 하는 사상을 전제로 제도화된 위안소정책은 유효한 강간방지책으로서 기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침략지에 있어서의 성유린을 조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이다.

앞에서 본 성병검사의 수자는 불과 3개월이라는 한정된 기간의 것이지만 「위안부」로 된 여성들의 전기간을 통해서 본다면 이환률은 훨씬 높아질 것이다. 정대협이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19명중 7명이 성병에 걸렸다고 증언하고 있다.

10. 임신

같은 정대협의 조사를 보면 19명중 2명, 즉 10.5%의 「위안부」가 임신을 경험하고 있다. 그중 한명은 사산이고 또 한명은 고아원에 애를 맡겼다고 한다.

황금주할머니는 중국으로 끌려간 당초의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처음 온 여자들은 처녀라고 얼마동안 장교들만 상대를 하게 했다. 장교들은 콘돔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이 기간에 임신한 여자들이 많았다. 임신이 된줄도 모르고 606호 주사를 맞으면 몸이 붓고 으시시 추우면서 하혈을 했다. 그러면 병원에 데려가서 의사가 자궁속을 긁어냈다. 이렇게 서너번 긁어내면 임신은 더 이상 되지 않았다」 28)

부국강병(富國強兵)이 고취되고 남자는 전장에, 여자는 병사를 낳는 성으로 간주되고 「낳아라, 늘리라」고 하는 인구정책이 취해진 旧헌법하에서는 타태죄가 엄격히 단속되었다. 1941년에는 나치스·독일의 단종법(斷種法)을 본딴 국민우생법이 실시되었는데 29), 이것은 악질유전방지를 목적으로 해서 국민자질을 향상시키려고 한것이며 일단 우생학적인 증절을 인정했으나 인구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규정이 정해져 있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는 임신증절이 허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안부」의 임신은 성병으로 간주되어 말없이 처치된 예도 있었던 것이다.

중국에서 7년간 위안소 생활을 체험한 송신도할머니는 수회 임신하였다. 그 중 한번은 사산이었고 두명을 출산, 한두번은 조선인 노파로부터 타태하는 민간요법을 배워 성공하였다.

군의가 성병이라고 간주한 임신, 「위안부」가 민간요법등으로 스스로 행한

타태도 포함하면 10.5%라는 수자는 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으리라고 본다.

11. 마약

전체수 속에서 본다면 극히 일부일 것이지만 업자에 따라서는 「위안부」들을 마음대로 조종하기 위해서, 또 아픔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아편등의 마약을 사용케 한 흔적이 있다. 하순녀할머니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내가 거기 가서 2, 3년 지났을 무렵, 고향으로 편지를 대신 써준 평양 여자가 아편증독으로 죽었다. 그 여자는 밥상에서 하얀 가루를 코로 들이마시곤 했다. (생략) 일본인여자 중에는 아편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조선인여자는 거의 하지 않았다」³⁰⁾

또한 1992년 1월 정보수집을 위해 실시된 「위안부 신고 전화」에 걸려온 수즈끼(鈴木) 기꾸에의 증언³¹⁾은 아래와 같다.

그녀는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나 전쟁중에는 철도성(鐵道省)의 통역을 하였다. 패전시 향타르에 있었던 육군병원에 민간인여성들은 수용되었는데 그 속에 조선인「위안부」도 섞여 있었다. 일본인여자들은 간호부의 보조나 재봉기질을 하면서 귀한선을 기다렸는데 조선인 전「위안부」들은 세탁이나 청소를 해야했다. 그리고 「朝鮮卑」라고 불리우면서 멀시 당하고 온갖 차별대우를 받았다. 그녀들은 필로폰 중독에 걸려 있어 금단증상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래서 필로폰을 구하러, 또 차별에 못견디어 잇달아 그 병원에서 나가버렸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여자에게 매춘을 시켜 번 돈을 깡패가 짜내는 경우 여자에게 마약을 쓰게 해서 도망갈 수 없게 하는 수단이 자주 취해졌다. 그와 마찬가지 방법을 위안소업자도 사용했다고 감안할 수 있을 것이다.

12. 사망한 「위안부」

하루에 수십번이나 군인의 성처리 대상으로 되여야 하는 상상도 못할 상황에 놓여진 「위안부」들은 흔히 자살원망을 가지게 되었다. 죽으려 해도 죽지도 못하고 치욕속에서 살아야만 했다고 하는 전「위안부」들이 적지 않다.

실지로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은 「위안부」도 있었다. 송신도할머니의 말에 의하면 어느날, 가까이에 있은 위안소에 현병들이 달려들어 어마어마한 분위기로 되었다. 와서 얼마 안된 「위안부」가 화장실에 들어 어간채 몇시간이 지나도 안나왔던 것이다. 이상하게 생각한 관리인이 문을 깨뜨려서 안으로 들어가보니 그 「위안부」는 벌써 숨이 없었다. 곁에는 크레졸이며 놓여있었다. 각 위안부에게는 행위후에 밑을 씻기 위해 크레졸원액이 지금 급되어 있어 수방울을 물속에 넣어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원액을 마셔 목숨

을 끊었던 것이다.

송신도할머니 자신도 心中(남녀가 같이 자살함)을 몇번 강요당할 번 했다고 한다. 군인들은 대의명분이 없는 침략전쟁에 동원되어 전황이 나빠짐에 따라 전쟁을 기피하고 싶은 감정에 빠져갔다. 그런데 상관의 명령은 천황의 명령이라고 해서 절대복종해야만 하는 군대생활에 있어서, 한순간이나마 도피할수 있는 장소가 바로 위안소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위안소에서 「적탄을 맞아 죽기보다는 너와 함께 죽고 싶다」라고 하면서 군인이 「위안부」를 無理心中의 동행자로 하려고 했던 것이다.

육군성의 『육지보대일기(陸支普大日記)』 1942년 제9호 32)에 「특별보고 중 군인 変死에 관한 보고」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건이 기재되어 있다.

1933년에 징집된 육군일등병이 3월 13일 23시 호북성 의창현 의창시 이마로(湖北省宜昌県宜昌市二馬路)에서 26년식 견총을 가지고 자살했다.

이 육군일등병은 1942년 1월경부터 자금령(紫金領)에 있는 위안소「이찌리끼(一力)」의 「위안부」와 장내 동거할 것을 원하고 있었는데 부대가 의창으로 이동, 「위안부」도 의창의 「이찌리끼」 지점으로 옮겨갔다. 3월 12일 음식점 「오오사까야(大阪屋)」에서 그 여자와 만난 육군일등병은 자기가 제대할때까지 「위안부」를 그만두고 「오오사까야」에서 여급으로 일하도록 청했으나 즉시 대답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다시 만날 약속을 하고 이튿날인 13일 저녁 점호후에 연대행리반장대리(連隊行李班長代理)었던 병장(兵長)이 마구간의 순찰로 나간 틈을 빠져 이 병장의 방에서 26년식 권총과 탄알 26발을 가지고 나왔다. 그래서 허가없이 외출, 「오오사까야」로 갔다가 「위안부」를 불러 전날의 요구에 대한 회답을 권했으나 거절당하여 너무나 흥분해서 21시 15분경에 갖고 온 권총을 발사, 「위안부」에게 중상을 입히고 그녀가 쓰러지는 것을 확인한 후 자기 목을 쏘아 중상을 입었다. 야전병원으로 운반되었으나 그는 23시에 사망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원인을 「장내 동거를 희망한 위안부의 승낙을 얻지 못하여 따로 남자가 있으리라고 오해, 질투 흥분했던 탓이라고 인정함」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 때 죽음을 강요당한 「위안부」는 전치 1개월의 중상을 입었다. 공습을 맞아서, 혹은 전투에 휩쓸려서 죽은 「위안부」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오키나와戰을 본다면 당시 오키나와 인구는 60만명에 달하지 않았고 그중 구주(九州) 에로의 소개자도 상당수 있었고 남양(南洋) 쪽으로 출가간 사람도 썩 많았는데 전쟁희생자는 십여만명이나 된다. 3명중 한명, 적어도 4명중 한명은 희생이 되었던 셈이다. 일본군은 약 12만명의 병사들 중 9만여명의 전사자를 내었다. 오키나와에 있었던 「위안부」는 현재 밝혀진

것만으로도 120~130개소에 달한다. 이 위안소들에 있었던 「위안부」들 중 조선인「위안부」가 4할, 기타 대다수는 나하(那覇)에 있었던 유곽출신의 「위안부」들로서 일부 일본본토출신「위안부」도 있었다. 미군이 오키나와로 상륙한 후 수많은 「위안부」들이 군에 의하여 방치되어 산산이 흩어졌다. 말도 통하지 않으며 지리도 모르는 조선인「위안부」의 경우 군과 함께 행동한 그들은 비율적으로 주민이상의 희생자를 내었으며, 군과는 헤어져서 행동한 「위안부」도 단순하게 생각해서 3~4명중 한명의 비율로 사망했다고 할 수 있다. 것이다 배봉기할머니와 함께 계라마(慶良間)의 3개섬에 각각 7명씩 연행된 「위안부」들은 도까시키(渡嘉敷)島에서는 한명이 사망, 2명이 중상, 자마미(座間味)島에서는 3명이 사망, 그중 한명은 중상을 입어 일본군장교와 함께자살 35), 아까(阿嘉)島에서는 2명이 사망했다.

그런데 일본정부의 조사결과에서는 「위안부」로 된 여자들의 총수도, 더구나

사망한 「위안부」의 인원수도 밝혀지지 않았다.

註

- 1) 防衛庁防衛研究所所藏
- 2) 우와 같음
- 3)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신대연구회編, 訳·종군위안부문제 우리 여성 넷트워크 『증언 강제연행된 조선인군위안부들』 1993년 明石書店 P108.
- 4) 上原栄子 『가두의 華·전후편 上』 1989년 시사통신사 권두의 그림페이지의 사진
- 5) 川田文子 『황군위안소의 여자들』 1993년 筑摩書房 P131.
- 6) 吉見義明편집·해설『종군위안부 자료집』 1992년 大月書店 P285.
- 7) 우와 같음 P290.
- 8) 우와 같음 P324.
- 9) 우와 같음 P325-326.
- 10) 川田文子 『붉은 기와집』 1987년 筑摩書房 P119.
- 11) 山田清吉 『武漢병참』 1978년 도서출판사 P77,82.
- 12) 종군위안부110번 편집위원회편『종군위안부110번』 1992년 明石書店 P75.
- 13) 前掲書 『황군위안소의 여자들』 P112.
- 14) 오키나와県立평화기념관소장 高崎隆治편·해설『軍医官의 戰場報告意見集』 1990년 不二出版 P123.
- 15) 前掲書 『증언 강제연행된 조선인군위안부들』 P108,109.
- 16) 前掲書 『종군위안부 자료집』 P323.
- 17) 우와 같음 P291.

- 18) 前掲書 『황군위안소의 여자들』 P117,118.
- 19) 前掲書 『증언 강제연행된 조선인군위안부들』 P125.
- 20) 前掲書 『종군위안부 자료집』 P287.
- 21) 우와 같음 P322.
- 22) 우와 같음 P325.
- 23) 防衛庁防衛研究所所藏
- 24) 前掲書 『증언 강제연행된 조선인군위안부들』 P63,64.
- 25) 우와 같음 P77.
- 26) 前掲書 『종군위안부 자료집』 P273-277.
- 27) 우와 같음 P232.
- 28) 前掲書 『증언 강제연행된 조선인군위안부들』 P109.
- 29) 太田典礼「墮胎금지와 優生보호법」 1967년 経営者科学協会 P28,P151-154.
- 30) 前掲書 『증언 강제연행된 조선인군위안부들』 P93.
- 31) 前掲書 『종군위안부110번』 P62.
- 32) 防衛庁防衛研究所所藏
- 33) 賀數 子외『오키나와, 전쟁과 여자 「위안소여자맙프」가 이야기하는 것』 제5회전국여성사연구교류의 모임 제1분과회 P11-21.
- 34) 前掲書 『붉은 기와집』 P77,196.
- 35) 우와 같음 P210,211.
- 36) 우와 같음 P221.

VI. 일본인·백인·그외 아세아인「종군위안부」의 이동(異同)

여기서는 일본군의 「종군위안부」 정책속에서 당시의 〈민족의 지배~피지배〉 즉 〈지배의 방식〉이 어떻게 작용했는가를 현시점에서 발견된 자료와 증언에 기초해서 일본인「위안부」, 아세인「위안부」, 백인「위안부」의 세가지로 나누어 ①징집시의 상황과 그 배경, ②위안소에서의 대우·보수 [그 수령의 유무], ③ 패전후의 처우의 세가지 점을 중심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1. 일본인「위안부」

①「징집」 시의 상황과 배경

1938년 1월초에 상해(上海) 교외에 개설된 군직영의 「육군오락소」에 있어서 「위안부」를 검진한 아소오 데쓰오(麻生徹男) 군의(軍醫)에 의하면 「그때의 피검자(被檢者)는 반도 [=朝鮮:筆者注, 이하 같음] 부인 80명, 내지 [=일본] 부인 20여명으로서」 「내지인의 대부분은……연령도 거의 20살을 넘고 안에는 40살이 될가망가하는 자도 있어 이미 매음(堯淫) 가업을 수년간 경래(経來) 한자 뿐이었다」 1)라고 되어있어 일본인「위안부」 경우 20살 이상으로 그것도 공창(公娼) 출신자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예외적인 사례이기는 하지만 〈특수간호부〉란 명목으로 일반 여성이 〈모집〉된 것도 있다 3).

이와 같이 일본에서 「위안부」들을 「조달」하기 위하여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것이 공창(公娼) 제도하의 여성들이었다. 이와 같은 여성들의 많은 부분은 일본사회의 최하층으로부터 부모에 의한 인신매매를 거쳐 게이샤(芸者)나 유곽의 창기(娼妓)로 되어, 그리고 공창(公娼)으로 된 후에도 거액의 부채로 몸을 구속당한 여성들이었다. 그녀들이 「위안부」로 된 것도 「포주집의 부채를 굳이 인수해 준다고 들었기 때문」 4)이라는 배경이 있었다.

일본인「위안부」의 「징용」 대상을 「매춘부」로 한정한 것은 일본本土에서 성경험이 없는 젊은 일본여성들을 「위안부」의 대상으로 할 경우 전선에서 싸우는 황군병사들의 지기에 동요를 일으킬뿐만 아니라 후방에서 「군국의 어머니」로 되어야 할 일본인 여성의 「아이를 낳는 성」도 성상시키게 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그 대신으로 식민지조선을 비롯한 피지배민족의 여성들에게 「위안부」의 역할을 강요한 것이다 5).

②위안소에서의 대우·보수

그런데 위안소에서는 같은 「위안부」라 하여도 일본인, 조선인, 중국인……이라는 급에서 차이가 있었다. 일본인「위안부」는 주로 「장교」용으로 되어 장교상대의 단가는 비쌌다. 또한 상주(常州) 주둔간내무규정(1938年 3月)에

의하면 병용이라 하여도 그 단가는 「지나(支那) 인 1엔○○센, 반도인 1엔 50센」에 비해 「내지인 2엔○○센」으로 가장 고액이었다 6). 그 때문에 막 대한 부채를 갚은 예도 적지 않다. 또한 납경(南京)과 같은 대도시에는 일 본인 「위안부」가 많으며 지방에 가면 갈수록 거의 없다는 경향이 있었다 7). 「위안부」 제도속에는 다른 민족의 여성들에 비하여 각별한 취급을 받는 한편에서 일본군으로부터 「日本卑(ピー)」, 「순진성을 잃은 여자들」(麻生軍医)이라고 업신여김을 받고 있었다.

③ 패전 후의 처우

매우 적은 증언에서의 판단이지만 다른 민족의 「위안부」에 없었던「배려」가 일본인「위안부」에는 있었다고 추측된다. 우선 거류민의 한 사람으로 귀국할 수 있었던 경우가 파악되어 있다. 한구(漢口)·무창(武昌) 등의 위안소의 일본인「위안부」들은 군이 파견한 화물자동차에 타고 구일본 조계지에 들어가 다음해 봄에는 일반 거류인과 함께 귀한선으로 귀국하였다 8). 일본인「위안부」로 유일하게 이름을 밝힌 故시로다 스스꼬(城田すず子)는 파라오에서 페전을 맞이하여 미군의 상륙후에 전보(伝保) 부대와 함께 행동하여 다음 해 미해군의 배로 귀국하였다 9).

그 외에 현지에 방치된 경우도 추측되나 사실은 알 수 없다.

2. 아세아인「위안부」

아세아인 여성에 대한 「종군위안부」정책은 일본이 이전에 감행한 식민지지 배 및 침략전쟁의 본질을 가장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는 (1) 당시 일본의 식민지로 된 조선·대만속에서 가장 인원수가 많고 증언·자료가 많은 조선의 경우와 (2) 일본군의 점령지로 된 지역속에서 중국 및 필리핀의 경우를 지적한다.

(1) 식민지·조선의 경우

(1) 「중군위안부」 속에서 그 대부분은 조선인「종군위안부」가 차지한다. 대량의 조선인여성 [그것도 미성년] 을 「징집」하여 조선반도에서 원격지인 중국·남양 제도 (南洋諸島) 등의 일본군 지배지역에까지 「연행」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역사적인 조건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 일본은 1910년 8월에 「한국변합」조약을 강요하고 조선을 식민지로 하여 패전을 맞이 할때까지 지배했다. 조선민중은 일본에 의한 철저한 식민지수탈에 의하여 빈궁에 처하고 나아가서 1937년 7월에 일중전면전쟁이 시작되면서 조선반도는 대륙침략을 위한 후방「병참기지」로 되어 또한 침력전쟁에 동원된 것이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종군위안부」는 물론 징병과 강제

연행·강제노동등의 조선인의 전쟁동원은 조선식민지지배의 일환이 였다는 것이다. 침략당하고 식민지로 된 결과 「일본국적」을 강요당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일으킨 전쟁도 아닌 침략전쟁에 동원된 점이 일본인의 전쟁동원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다.

또한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화하는 과정에서 일본식 공창(公娼) 제도를 조선에 도입하였다. 「병합」 이전부터 일본인의 매춘업자가 조선에 상륙하여 잇달아 일본식 유팍을 만들었으며 「병합」 이후 1916년에는 조선인 매춘부의 공창화를 한층 철저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법규를 발포하여 일본식의 공창제도를 확립하였다 10). 그러한 성차별적인 공창제도하에서 일본의 여성도 조선의 여성도 착취당했으나 조선인여성은 민족차별도 첨가되어 더 한층 열등한 지위에 놓이게 되었다. 이미 언급한바와 같이 일본인 여성에게 적용된 「부녀 및 아동의 매매금지에 관한 국제조약」 등에서 식민지였던 조선·대만·관동 조계지를 제외한다는 차별적인 취급을 한것을 그 가장 전형적인 것이라고 할수 있다.

① 「징집」 시의 상황

이와 같이 조선인 여성을 전투지에 연행하여도 국제조약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일본정부·군이 판단했기 때문에 이른바 매춘부가 아닌 조선인 여성은 중국에 있어서 「위안부」 도입정책이 본격화한 당시부터 동원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아소오(麻生) 군의의 보고서에 의하면 1938년 1월 초에 상해교외의 위안소에서 검진한 약 100명의 「위안부」 속에서 80명이 조선인여성이었는바 「반도인속에서 화류병(花柳病) 이 의심스러운 자는 극히 소수」「반도인에 젊은 연령과 초심(初心)인 자가 많음」 11)이라고 지적된 것처럼젊고 성경험이 없는 것이 그 특징이었다.

이것은 한국에서 과거를 밝힌 피해당사자의 증언과도 부합된다. 전「위안부」 19명 중 20살이하가 17명이 되어 최저 연령은 11살, 최고 연령도 22살이며 16, 17살이 가장 많고, 1명을 제외해서는 모두가 미혼녀였다 12). 또한 1943년에 무한(武漢) 병참의 위안계장이 된 야마다 세이기찌(山田清吉) 소위에 의하면 한구(漢口)의 적경리(積慶里)에 있었던 육군위안소 20개소 「위안부」 280명속에서 조선인 경영은 11개소, 조선인 「위안부」는 150명이 있었으나 이들 조선인 「위안부」는 「[매춘의] 전력도 없고 낌령도 18, 19살의 젊은 기생이 많았다」 13) 는 회상과도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연행시의 나이는 거의 「소녀」라고 부를수 있는 연령이었다. 또한 조선인여성이 징집된 당시의 특징은 「사기」의 경우가 많했다는 것이다. 전술한 전「위안부」 19명의 21번 [19명중 2명이 2차례의 연행과정을 경험]의 동원방법은 「일본에 가면 돈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식의 취업사구가 13건으로서 폭력적 수단 [폭행, 협박, 권력남용]에 의한 동원 4건, 유괴

납치 2건, 매매 2건, 기타 1건보다 훨씬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다 14). 이 사실은 미군의 공문서에 의해서도 뒤바침되어있다. 「1942년 5월 초순 일본의 주선업자들이……『위안역무(役務)』에 취하는 조선인여성을 징집하기 위하여 조선에 도착하였다. 그 『역무』의 성격은 명시되지 안했으나 그것은 병원에 있는 부상병을 문병하여 포대(包帶)를 묶어주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장병을 기쁘게 해주는 일이라고 추측되었다」「……대부분은 매춘에 대하여 무지, 무교양이었다고 되어있어 조선인여성에 대하여 「거짓의 설명」을 하여 징집한 것이 보고되어있다 15).」

거의 모든 조선여성은 「징집」 시에 자기가 「종군위안부」로 될 줄이라고는 자각함이 없이 전투지에 연행되었다. 그와 같이 일본군은 자기 나라에서는 「위안부」 징집의 대상으로 하지 안했던 일반 여성들 [그것도 미성년] 을 식민 지조선 [및 대만] 에서 징집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징집과 후에 언급하는 차별적대우를 강요한 자들 중에는 일본인 업자이외에 일본군의 출개로 된 조선인 업자가 수 많이 있었던 것도 특징의 하나이다.

② 위안소에서의 대우·보수등

속아서 원격지의 위안소에 연행된 조선인여성은 장병으로부터 성행위를 당하고 처음으로 자신의 일내용을 알아차렸으나 그 때는 이미 도주할수 없는 상태에 놓이고 있었으며 또한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부채가 붙어 있었다. 위안소에서도 식민지민족에 대한 차별이 조선인여성을 더욱 가혹한 처지에 내몰았다. 일본인 「위안부」는 주로 장교의 상대를 하였으나 조선인은 압도적으로 많았던 일본 병사들을 상대로 하루에 수십명을 대상으로 「위안」을 강요당했다. 또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1시간당의 단가」도 일본인 「위안부」에 비하여 헐했다. 그것도 V에도 있는 바와 같이 많은 조선인 「위안부」는 그 보수를 받지 않고 있다.

위안소에서는 모국어가 금지되어 「위안부」끼리의 회화도 지적을 받았다. 일본식의 「원씨명(源氏名)」으로 불리고 일본의 끼모노 [着物] 와 일본식 머리 모양을 강요당했다. 또한 일본군 병사로부터 「朝鮮卑(ビー)」라고 불리여 멸시당했으며 일상적으로 차별적인 언사로 모욕당했다.

또한 중국대륙에서는 일본인 「위안부」가 주로 대도시에 많이 있었던 반면에 조선인은 지방에 연행되었다 16). 위안소만이 아니라 특정의 부대에 붙어서 부대의 작전에 따라 행동할 때도 있었다. 송신도(宋神道) 씨의 증언에 의하면 그 때에는 식사, 의료품등은 군에서 지급되었으나 세탁, 전쟁부상자와 병사들의 간호등 무엇이라도 강요당했다고 한다. 송씨자신도 총탄이 날아오는 전선까지 「종군」하여 위안소도 아닌 장소에 사람이 한명 들어갈수있는 구멍을 파고 거기에 모포를 깔고 「위안」을 강요당했다 17). 위험한 격전지이면 일수록 조

선인 「위안부」가 투입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조선인 「위안부」들은 잔인 그지없는 취급을 당했다. 1941년 18살로 「위안부」를 강요당한 김영실(金英實) 씨 [북조선거주]에 의하면 일본군은 「『도끼꼬』라고 불리던 가장 어린 소녀가 조선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위안부』 전원이 모인 앞에서 그녀의 목을 일본도(칼)로 잘라 학살」 18) 하는 만행을 범했다고 한다. 또한 「위안」을 거부할 경우 일본군병사와 업자의 폭행을 당하는 것은 일상시의 일이었으며 심지어는 「총검으로 (거부한) 그녀들의 유방을 자르고 온몸을 찌르고 학살」 [이복녀(李福女) 씨의 증언 19)] 한 예도 있었다고 한다. 조선인 「위안부」들은 최저한의 언어표현 까지도 빼앗긴 하반신만의 성적존재였으며 그야말로 「성적노예」였다.

③ 패전후의 처우

조선인 「위안부」에 대한 패전후의 처우를 보며는 그러한 차별적인 취급이 더욱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가지 경우를 생각할수 있다. 우선 현지에서의 유기(遺棄)이다. 거의 모든 조선인 「위안부」는 일본군으로부터 패전의 사설조차 알려지지 않는채 현지에 유기·방치되었다. 송신도씨는 위안소의 마담으로부터 패전을 들었으나 그 날부터 일본군 장병이 위안소에 안오게 되었다고 한다 20).

어제까지의 적나라에 방치된 「위안부」들은 자신의 힘으로 귀국하는가 미군 수용소에 수용된 후 귀국하였다. 그 때 미군의 「위안부」를 강요당한 예도 있다. 또한 오끼나와(沖繩)의 배봉기씨나 타이의 유·유따씨와 같이 현지에 그냥 남아서 전후를 살아간 예도 있다.

다음은 귀한선에 승선시킨 경우이다. 패전 직전의 2월경 싱가포르에서의 귀환선 히까와마루(氷川丸) 가 중국의 해남도(海南島)에 경유하고 100명의 「위안부」를 승선시켰다. 일본의 사세보(佐世保), 구례(具) 항에 내렸다고 한다 21).

(2) 점령지(중국, 필리핀)의 경우

〈중국〉

중국에서의 위안소설치의 직접적인 계기가 1937년 12월의 남경(南京) 대학살에서의 중국인 여성에 대한 대규모적인 강간행위였다는것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중국인 여성에 대한 강간, 윤간은 일본군이 가는 곳마다에서 무자비하게 감행되었다. 일본군의 군의마저 「육군군인은 성욕의 노예와 같이 전투장을 더럽히고 있다」「강간은 일상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지나(支那) 양민은 일본군을 보며는 언제나 그것을 무서워했다」 21) 고 지적하고 있다. 강간, 윤간은 중국국민에 대한 폭행, 학살, 방화, 약탈과 함께 감행되었으나 전쟁 도중에서는 일정

한 지역의 중국주민을 살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산꼬오작전 (三光作戰)」 [=모두 학살하고 모두 랙탈하고 모두 불태운다] 까지도 감행되었다 23). 이러한 잔악행위의 배경에는 이 전쟁이 부정의의 침략전쟁이었다는 것을, 또한 당시의 일본인이 중국인을 인간이하의 존재로서 별시 차별하고 있었다는 사실들이 있었다.

이와 같이 중국인 여성의 경우 일본인병사에 의하여 강간, 윤간당하여 그 후에 많은 경우 학살되었다. 그리고 적군인 일본군의 「위안부」를 강요당한 것이다. 이와 같이 일본군에 의하여 장기간 성폭력을 당한 중국인 여성 속에서 「위안부」로 된 것은 일부라고 추측된다. 그러나 중국인 여성의 피해는 전쟁의 기간·지역·인원수의 면에서 심대하였다고 추측되나 그 실태에 대한 연구는 너무 깊어지지 않고 있다.

①「징집」 시의 상황

중국인 여성의 「징집」에 대해서는 IV에서 서술되어 있으나 자료, 증언이 적기 때문에 그 특징, 실태는 거의 알 수 없다.

②위안소에서의 대우·보수

1940년 1월에 일본군이 조사한 「성병에 관한 제반 통계표」에 의하면 성병에 걸린 「위안부」 5, 418명의 민족적 구분은 일본인 26. 24%, 조선인 45. 31%, 중국인 28. 37%였다 24). 여기서도 일본군의 관리하에 있던 다수의 중국인 「위안부」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중국대륙에 있어서 일본인이 주로 도시로 조선인은 지방에 많았던 것에 비해 중국인 여성은 어떤 지역에서도 「위안부」로 되었으나 중국인 「위안부」가 압도적으로 많은 지역도 있었다 25). 또한 판명된 사실만으로도 중국인 「위안부」는 조선인 「위안부」보다 더욱 열등한 지위에 놓이고 있었다. 이미 언급한 「1시간당 단가」에서도 조선인 「위안부」보다 그 금액이 적었던 사실에서도 그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녀들은 「만삐 (満ピー)」「지나삐 (支那ピー)」라고 별시되어 불리었다.

일본군에게 3번에 걸쳐 폭력적으로 납지되어 「위안부」로 된 만애화 (万愛花) 씨는 1943년 같은 마을의 4명의 여성과 함께 토벌작전으로 온 일본군에 의하여 일본군의 거점에 연행되어 서로 다른 방에 구속되었다. 그 날부터 「위안」을 강요당했고 여성들은 서로 얼굴을 보는 것 조차 금지되었다. 3 번째 납지되었을 때에는 일본군은 몸모양이 변할 정도로 폭력을 가하여 의식 불명상태로 나체로 하여 마을의 강에 내던졌다고 한다 26). 또한 전일본군병사의 증언에 의하면 일본군의 작전행동 중에 「간첩혐의로 체포된 중국인 여성」이 유격대나 정규군의 여병으로서 「포로로 된」 여성들을 최나 팔로군 (八路軍)의 유격대나 정규군의 여병으로서 「포로로 된」 여성들을 전선부대의 「위안부」로 배치한 예도 있었다 27). 그녀들은 「전선부대에 피임」 (避妊具)의 보급이 없었기 때문에 ……인심한 여성도 적지 안했다. 임신하

여도 사용할 수 있는 동안은 사용하고 사용할 수 없어지며 구덩이밖에 연행하여 나무에 묶어서 초년병의 훈련도구로서 찔러죽여 누구의 얘기라고도 알지 못하는 태아와 함께 참살하여 묻어버린 사실도 있었다 28) 는 잔악한 대우를 받았다. 보수의 수수가 있었던다는 불명이다.

이와 같이 중국인 여성은 죽여도 좋은 적국의 여성으로서 29), 한층 가혹한 취급을 받았다.

③폐전후의 처우

자료, 증언이 거의 없어 불명이다.

〈필리핀〉

1941년 12월 8일에 아세아 태평양전쟁이 일어난 직후인 22일, 일본군 주력부대는 필리핀, 루손섬에 상륙하여 다음 해 1월 3일까지 군정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필리핀의 군사접령은 필리핀인 항일유격대의 활동에 의하여 위협당하고 또한 1944년 여름부터는 미군의 반공격도 시작하여 안정적인 지배를 할 수 없었던 상태에 있었다. 때문에 일본군은 「항일유격대 토벌」의 명목하에 주민학살과 약탈을 감행하였다.

①징집시의 상황

필리핀에서도 군지정의 위안소가 있었다는 것이 판명되어 있으나 그러한 위안소에 동원된 것은 주로 조선인 여성었다. 1944년 여름에 미군의 반공격이 시작되어 오는 필리핀결전에 대비하여 일본군이 구 「만주」 등에서 증강되었으나 그것에 대응하는 위안소가 없었다. 위안소가 제도적으로 확립할 수 있었던 상황 속에서 일본군은 필리핀여성을 「현지조달」 하여 성적배출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1943년 4월에 도쿄에서 보상을 요구하여 제소한 18명의 거의 모두가 이 나라를 접령·지배한 각 부대, 장교들이 필리핀 여성을 폭력적인 수단으로 납지하여 주둔지내의 건물이나 숙소에 갑금하여 계속적인 강간·윤간을 거듭한 경우 [V의 3의 예]였다. 그녀들은 일본군에게 납지된 시기의 연령은 12살부터 26살이며 기혼, 독신을 불문하여 젊은 여성하였다 30).

②위안소의 대우·보수

앞에서 언급한 18명의 경우를 보면 도망갈 수 없는 환경에서 식사도 만족하게 보장 안되었으며 「위안」의 강제 이외에 세탁, 취사 등에 종사당했으나 보수의 수수는 거의 없었다 31).

③폐전후의 대우

폐전전의 미군상륙으로 석방된 필리핀인 「위안부」도 있었으나 일본군 철수시에 학살된 「위안부」의 수도 많았다고 한다. 「위안부」 학살에 대하여 루손섬의 부대에 있었던 전일본군인 도모기요 다가시 (友清高志)는 「적의 상륙할 때

까지는 여자는 참으라. 상륙하며 강간하여도 무방하다. 다만 반드시 묻어라고 헌병이 지시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세상 마지막으로 여성은 요구했다. 미군이 가까와지면 죽일수 밖에 없었다. 들려보내면 우리의 사실이 알려지기 때문이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32).

필리핀 「위안부」의 경우 아세아·태평양전쟁이 발발한 후 일본군이 침략·점령한 동남아세아의 지역과 나라들의 여성에 대한 성적폭력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3. 백인 「위안부」

백인여성을 「종군위안부」로 한 사례로서 자료 및 증언에서 확인되는 것은 인도네시아의 포로수용소에 수용된 네덜란드인 여성의 경우다. 전법재판자료에 의하면 「위안소사건」 관계가 3건 기록되어 있다.

① 「징집」 시의 상황

1944년 3월에 「스마란」 주둔사령관이 「[제16] 군사령관과 암묵의 양해밑에서 『스마란』 억류소에 수용된 약 백명의 네덜란드부인을 해방하여 그들을 시내 4개소에 분배하여 위안소를 개설했다」 33). 「스마란」 억류소 이외에도 「안베라우」 수용소에 억류된 여성 약 35명의 예도 있으며 네덜란드 국립공문서관 소장의 재판자료에 의하면 그 2개의 수용소에서 실제로 2월에 연행된 여성은 35명이었다 34). 연행은 자원형식의 문서로 했으나 그중 적어도 25명은 「사기, 폭력, 협박을 함으로써 억류소에서 부인과 소녀를 연행했다」 35).

그것은 피해자의 증언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44년 2월 「안바라우」 수용소에 갇힌 잔르·오르해네는 수용소의 중노동에서 돌아오는 도중 화물자동차로 도착한 수많은 일본군들에게 불리여 「17살이상의 독신여성을 마당에 정렬시키라」는 명령을 받아 다른 소녀들과 나란이 하였다.

10명의 여성이 「선발」되어 억지로 화물자동차에 태워 그냥 「세마란」의 위안소에 연행되었다고 한다 36).

② 위안소에서의 대우·보수

이미 언급한 사령관은 재판에서 「『스마란』의 각 수용소 및 『안베라우』의 수용소에 억류된 약 35명의 부인을 위안소에 속박시키고 매음을 강제시켜 또한 부당하게 취급한 책임」 37) 을 추궁당한 것을 보면 네덜란드인 여성들이 매춘행위를 강요당한 것은 분명하다. 그때 4건의 위안소가 개설되었으나 경영자의 신분은 군속이었다 38).

잔느씨에 의하면 위안소에서 그녀들은 사진을 찍히고 [대합실의 벽에 붙였다]

일본이름을 달았다. 그후 3개월간 일본군병사의 칼로 협박당하면서 성병을 조사하는 군의에까지 강간당하였다고 한다. 임신한것을 알면 일본인간수가 약을 얹지로 먹이고 유산시켰다 39). 이 두개의 수용소 이외에도 「잔베르」 현병분대 사건에서는 네덜란드국적 여성을 「강제로 위안소에 구속하여 매음시켰다」고 한다 40). 또한 보수의 수수는 명확하지 않다.

③ 위안소에서의 「해산」

III에서 지적한바 같이 1944년 4월 일본에서 참모본부장교가 시찰했을 때에 이 강제매춘이 발각되어 그 위안소는 즉시 폐쇄가 지시되었다.

일본군은 점령지 여성에 대한 강간, 강제매춘이 전쟁범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면서 실행하였다. 네덜란드 여성의 사례는 일본군이 네덜란드령 인도네시아를 점령하고 네덜란드인을 일본군의 포로수용소에 수용한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 그 인원수에서도 예외적 사례이기는 하지만 강제적으로 위안소에 연행·감금되어 계속적인 강간·윤간을 당한 점에서 점령지 여성의 당한 성폭력의 전형적인 사례의 하나이다.

그러나 일본군은 아세아인 여성에 대한 강제연행을 방지할 지시는 내리지 안했던것에 비교하여 백인여성에 대해서는 강제매춘을 해서는 안된다는 지시를내린것이다.

일본군, 일본정부는 자기나라의 여성들을 일반여성과 공창여성으로 2분하여 전자를 「아이를 낳는 여성」으로서 「군모의 어머니」로 만들고 후자에 대해서는 「괴악의 성」으로서 「위안부」의 대상으로 한 것이다. 「위안부」로 된 여성은 모두가 그 출신의 여하, 대우정도에 관계없이 같은 성차별적인 「종군위안부」 제도의 피해자였다. 이것은 다시 말할것 없다. 그러나 이 제도속에서 피지배민족에 대한 멸시감·민족차별에 의하여 <이민족>의 <여자>들 특히 아세아여성들이 더욱 비인간적인 취급을 당한것이다.

註

- 1) 麻生徹男 「花柳病의 적극적 예방법」, 동「상해부터 상해로」에서, 1993년 石風社 福岡 P125~216
- 2) 長沢健一「漢口위안소」 1983년 도서출판사, 東京 P51~53. 이에 의하면 1937년 7월의 일중전쟁발발후 상해파견군은 위안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서일본각지의 유곽에 협력을 요청, 오사카의 松島유곽의 업자는, 공창출신의 일본인여성과 함께 중국에 가서 위안소를 개설했다. 다만 연령을 보며는 18살에 芸者에서 「위안부」로 된 예 [広田和子『증언기록 종군위안부·간호부』1975년 新人物往来社 東京 P18] 나 지바현모바라 위안소에서 17살로 「위안 부」로된 예도 있었다. [川田文子『皇軍위안소의 여자들』1993년 築麻書房 東京 P186~187]
- 3) 종군위안부110번편집위원회「종군위안부110번」1992년 明石書房, 東京 P3 2등
- 4) 広田和子 前揭書 P18과 P42
- 5) 鈴木裕子 「가라유끼상·〈종군위안부〉, 점령군〈위안부〉」, 『「종군위안부와 성폭력』1993년 未来社 東京 P75~P78
- 6) 独立攻城重砲 제12대대「常州駐屯間內務規定」, 1938년 3월 『자료집』 P207. 「요금」에 대해서는 증언이 많다. 海城에 있었던 위안소에 대해 군의는 「일본인, 조선인, 중국인의 순서로 값이 헐하게 되었다」 [증군위안부 110번 편집위원회 前揭書 P24], 인도네시아의 「스라바야」에서 일본군 특별공작대의 타이피스트를 한 일본인 여성도 「일본인위안부의 경우 2엔50센 조선인위안부의 경우는 1엔부터 1엔50센」 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우와 같음 P2 8)
- 7) 吉見義明 「종군위안부와 일본국가」 『자료집』 P52.
- 8) 長沢健一前揭書 P224~230
- 9) 城田スズコ 『마리아의 찬가』1971년, 東京일본기독교관 출판국 P69~76
- 10) 山下英愛 「조선에 있어서의 공창제도의 실시」 윤정옥 기타 著『조선인여성이 본 「종군위안부」』1992년 3·1新書 東京
- 11) 麻生徹男 前揭書 P215~216
- 12) 鄭星 「해설 군위안부에 실상」, 한국전선대책협의회, 전신대협의회편 『강제연행된 조선인종군위안부들』1993년 2월 도서출판 한을, 서울. 일본에서는 우리여성 넷트워크 번역『증언-강제연행된 조선인군위안부들』1993년 10월, 明石書房 東京. 해당인용은 일본어판 P25~27. 이하 『증언』이라고 생략함.
- 13) 山田清吉 『武漢兵站』1978년 図書出版社사 東京 P86
- 14) 鄭星 前揭書 일본판 P25
- 15) 미전시정보국 십리작전반 「일본인포로 심문보고」 제49호, 1944년 10월 1일, 『자료집』 P441
- 16) 주 8과 같음, 또한 전일본군병사의 증언에 의하면 「[중국] 宣興이라는 장소는 제1전부대로서 매일밤에 적과 조우하게 됩니다. ……여기에 15명 쯤의 위안부가 있습니다. …… 15명전원이 조선인이었습니다」 [1992·京都 「알려주시오! 〈종군위안부〉 정보전화」 보고집편집위원회편, 『성과침략「군내위안소」84개소 전일본병사들의 증언』1993년 사회평론사 東京 P122]. 그외에 이미 언급한 인도네시아에 있었던 일본 타이피스트「전선에 가는 부대에 위안부들이 종군한것을 본바 있습니다. ……위험한 전선에 간것은 거의 조선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고 증언하고 있다. [종군위안부 110번 편집위원회前揭書 P30]
- 17) 川田文子 前揭書 P130~132
- 18) 成律子 「북조선의 전〈위안부〉들」 『世界』 1993년 3월호 P282
- 19) 우와 같음 P286
- 20) 川田文子 前揭書 P138
- 21) 「札幌민중사 시리즈6」 편집위원회편 『전쟁체침-서민이 뒤받침한 전쟁이란 ……』1993년 札幌 P110~112
- 22) 甲府台陸軍病院중위 早尾 雄「전투장에 있어서의 특수현상과 그 대책」1939년 『자료집』 P228~233
- 23) 江口圭一「중국전선의 일본군」, 藤原彰·今井清一『15년전쟁사 2』1988년 青木書店 東京
- 24) 北支파견 多田부대, 富家부대, 福島부대조사 「성병에 관한 제반통계표」1940 40년 『자료집』 P238
- 25) 주8과 같음
- 26) 万愛花 「나는 일본군이 죽도록 밟다」 국제공청회실행위원회편 『세계에서 추궁되는 일본의 전후처리②』1993년 東京出版, 大阪 P90~95
- 27),28) 일조협회 사이다마현 연합회편 『증언「조선인종군위안부」』1992년 P18 ~19
- 29) 중국인 여성에 대한 강간에 대하여 이미 언급한 早尾 雄는 「内地에서는 도저히 용서될수 없는것이 적의 여장이니까 자유롭게 된다는 생각이 매우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支那아가씨를 보며는 마음이 끌려간다」고 말하고 있다. 『자료집』 P229
- 30) 필리핀 전「종군위안부」를 지원하는 회편 『필리핀「종군위안부」보상청구 사건訴狀』1993년 東京
- 31) 우와 같음

32) 朝日新聞 1993년 3월 30일부

33)~35) 吉見義明 前掲論文 P74~76

36) 잔느·오르헤네 「강간된 여자의 웨침」 국제공청회실행위원회면 前掲書 P79
~83

37),38) 吉見義明 前掲論文 P74~76

39) 잔느·오르헤네 前掲書 P83~89

40) 吉見義明 前掲論文 P74~76

VII. 산업「위안부」

전시하, 많은 조선인이 전쟁 수행을 담당하는 군수산업의 노동력으로 투입되었다. 특히 그 동원이 현저하게 된 것은 1938년 국가 총동원법이 나온 이후였다. 자유 모집의 형태도 차차 관할선 또는 징용이라고 하는 강제 수단에 의해 강제 징집으로 변해갔다. 일본 국내는 물론 조선국내, 아시아 태평양 전쟁 이후는 남방 각지에도 그 노동력을 보내졌다. 탄광, 광산, 군수공장, 군수시설, 비행장 건설, 댐건설 등에 보내졌던 조선인 청장년은 일설에 수백만명에 다다르지 않을까 하고 추정 되어지고 있다. 일본 국내에 연행된 노동자는 일본 정부의 조사에도 72만 4727명에 달하고 있다 [1947년 재무부(大藏省) 조사]. 그 노동을 목적으로 했던 조선인 강제 연행의 배후에는 조선인 부녀자의 산업「위안부」징집이 있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1. 조선인 산업「위안부」

탄광이나 군수 시설에는 육해군에서와 같은 위안소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것이 조금씩 밝혀지기 시작했다. 그 위안소에는 조선인 여성이「위안부」로 징집되었다는 것이다. 현재 일본 정부나 일본 각 기업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나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밝혀져 있는 것을 이하에 제시한다.

조선인 여성들이 산업「위안부」의 형태가 되었던 것은 국가총동원법 이후 조선인 강제 연행이 심해졌던 때와 시기를 같이 한다. 각지의 산업 위안소에 보내졌던 여성은 일본에 사는 조선 여성도 대다수를 차기했었으나 그 외에도 군「위안부」와 같이 속아 강제 수단에 의해 연행되어온 여성도 적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탄광이나 군수 시설에 위안소가 설치되었던 것일까. 우선 결론부터 말해 보자. 강제 연행에 의해 투입당했던 조선인 남성은 그 가혹한 노동 조건의 상황 속에서 부상자가 끊임없었고 파업을 포함한 저항 탈주 등 도망이 잇달았다. 노동력 부족을 대단히 걱정한 기업과 정부는 몇 가지의 선후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들을 정착화시키기 위해 가족을 불러 들이는 정책도 그중의 하나였다. 그것과 동시에 고안되었던 것이 성적 위안 시설이었다.

1943년 노동과학연구소에 의한『반도 노동자 근로상황에 관한 조사 보고』에는 구주(九州)에서 북해도(北海道) 까지 각지에 있는 사업소 [광산·토건·공장등] 37개사의 조사 보고가 정리되어 있다. 어떤 광업소에는 회사가지정했

던 조선 요리점에 조선인 여성을 「작부」로 두고 회사가 가격을 정해 여성의 성병검진을 등네 의원에 맡겨 시행하고 있었다. 또 다른 광업소에는 「성적 해결책으로 조선식 술집을 지정」, 건물을 무상 대여해 조선인 여성은 작부로 두고 있었다. 그곳 여성들의 검진은 탄광 의국에서 매월 실시되어지고 있었다. 게다가 또 다른 광업소에는 조선인 여성 7명을 두었던 「술집」의 개업을 허가하며 예방기구 [위생 피입구]는 각료에 준비시켜 무료로 사용하게끔 했다. 여성들의 성병검진은 경찰서에 맡겨져 있었다. 결국 기업과 관헌이 연계성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⁶⁾.

관헌과 사업소의 연계성에 관해『화인노무자 취로 경위 보고서』[1946년 이뢰(二瀬) 광업소]의 「사업소 화인노무 관계직원」의 항에 의하면 기업에 경찰관이 상주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관헌은 규제 경계와 관리지도를 맡고 있었다. 또한 이입, 송환시에는 「모든 정부 또는 그 지방 관헌의 지시 명령 또는 화북 노공협회의 신청에 의해 사업소 직원 또는 의사 경비원을 첨부시킨다」는 것이었다⁷⁾.

2. 설치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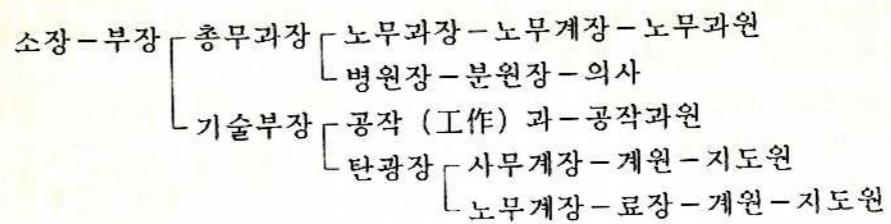
왜 이들 사업소에 위안소가 필요했던 것일까. 말안 이유의 하나로서, 조선인 「근로자」의 노동의욕 촉진을 위한 것이 있다. 「대동아전쟁 이후 민족 노동 연구의 요청은 점점 더 강해졌다」「반도 근로자 문제는 특히 중요」「관리단의 특이한 성격을 발견하는 것에 힘써, 그것을 지배하고 있는 제요소에 대해 연구를 진행시켰다」「반도 근로자 제문제에 관해 충분한 성적을 올릴 수 없는 상태에 있어서는 이후 민족동화는 지극히 곤란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⁸⁾ 등에 그 취지를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전쟁말기에 다다라서는 엄청난 수의 강제 연행이 조선각지에 펼쳐졌다. 억지로 트럭에 태워져 연행되온 조선인은 탄광, 광산 등에 보내졌으나 충분한 식사도 주어지지 않고 규정의 노동시간도 지켜지지 않으며 임금도 거의 받지 못한 채 학대, 혹사, 린치에 시달리는 생활을 강요당했다. 그런 상황에서 체력과 기력은 쇠퇴되어, 노동의욕이 있을 리가 없었다. 저항하거나 항의하려고 하면 잔혹한 린치나 본보기로서의 폭행이 가해진 것이었다.

그러나 경영측은 그런 사태를 그냥 힘으로 밀어붙일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에 강구해낸 것이 설탕발립의 정책이었다. 저항 없이 잘 일하고 기업측의 말을 잘 듣는 조선인에게는 포상으로 위안소를 주는 것을 생각해 냈던 것이다⁹⁾.

3. 조선인 산업 위안부

1940년에 육군성(陸軍省) 정비국 전비(戰備) 과장으로부터 북해도(北海道) 탄광기선(炭鉱汽船) 주식회사 자료과장에게 보냈던 「모집관계잡(募集關係雜)」(노무과)에는 성적 욕망을 고려한 후생시설로 「조선인, 지나(支那) 인(二瀬) 광업의 경우 그 계열은 아래와 같다 10)」에 관한 내용이 있었다. 이 담당은 노무과로 되어 있으나 이뢰(二瀬) 광업의 경우 그 계열은 아래와 같다 10).



산업 「위안부」의 경우는 노무과가 그들을 담당하고 있었다. 징집은 관헌의 협력에 의해 시행되었으며 그 경우 기업과 계약업자에 의해 여성은 징집했던 경우와 관헌이 직접 나서 징집한 경우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구주(九州)에는 강제연행되어 왔던 대부분의 조선인이 투입된 탄광이 각지에 있었다. 죽풍(筑豊)에 있는 고하대봉광(古河大峰鉱), 고하봉지광(古河峰地鉱), 풍주(豐州) 탄광에는 조선인 위안부가 있었던 산업위안소가 적어도 10개소가 있었다. 「조선관(朝鮮館)」, 「취심(醉心)」, 「대화야(大和屋)」, 「신길야루(新吉野樓)」, 「소화정(昭和亭)」 등으로 이름 지은 「특수음식점」, 「접객점」에는 조선인 여성이 「위안부」로 있었다. 여성들에게 지불하는 요금은 탄광에서만 적용되는 탄광발행의 티켓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전탄광노무계는 「여자정신대로 데려왔다」고 말하고 있다 11). 조선 경상남도에 있는 군수 공장에 연행당했던 이경생씨의 예를 들어 보자. 이씨가 연행당했던 것은 1929년의 일이었다. 「좋은 공장에 데려가 준다」고 말해, 당시 12세였던 이씨를 데려갔던 사람은 지주와 마을의 이장이었다. 태워진 트럭에는 벌써 10대 안팎의 소녀 4명이 타고 있었다.

연행당했던 곳은 경상남도 창원에 있던 화약등의 군수 물자를 제조하는 공장이었다. 연행당해왔던 조선인 소녀는 20여명이 있었다. 이씨는 일본인 장교를 도와 주는 일을 하였으나 몇개월 후에는 그 외의 여성들처럼 작은 방에 들어 보내져 「위안부」를 강요당했던 것이다.

현재 각지에서 산업위안소에 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으나 증언자가 적기

때문에 그 전모는 해명되지 못하고 향후의 과제로 연구되어야 한다.

4. 송대(松代)의 위안소

장야현(長野県) 장야시(長野市) 송대정(松代町)에 있는 송대대본영지하호적지(松代大本營地下壕跡地) 부근에서 조선인「위안부」가 있었던 위안소가 확인되었다. 송대대본영지하호(松代大本營地下壕)의 건설에 있어서는 강제연행을 포함해 총 300만명의 조선인이 「동원」당했다고 한다. 당시 여기에 위안소를 설치, 경영하는 것은 「조선인이 근처의 부녀자를 허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라고 경찰관이 말했다고 하지만 실제 그 위안소를 이용했었던 사람은 그 공사고 경찰관이 말했다고 하지만 실제 그 위안소를 이용했었던 사람은 그 공사고 경찰관이 말했다고 하지만 실제 그 위안소를 이용했었던 사람은 그 공사

를 지휘했던 군인이나 군 소속의 사람들 이었다.
20세 전후의 조선인 여성 4명이 있었던 이 건물은 전쟁 전에는 양잠실이었으나 경찰관이 반강제적으로 1944년 12월부터 월세 100엔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 집에는 위안소의 관리인인 조선인이 가족 5명과 경호원인

조선인 남성도 같이 살았다고 한다⁸⁾.
그 송대(松代)에 지어졌던 산업위안소의 예에서 중요한 점은 그것이 조선인 노동자를 위해서라고 하면서 실은 지휘관들을 위한 것이었던 것이다. 송대 대본영(松代大本營) 지하호 건설공사는 극비리에 추진되었다. 폐전색이 짙어졌던 1944년, 본토 공습이 피할 수 없게 되면 육군의 일부는 대본영(大本營)을 송대(松代)로 이전시켜 본토 결전을 대비시키려고 그 공사를 서둘렀다. 군부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비밀 누설이었다. 그로 인해 그 공사에 투입당했던 조선인은 일체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가혹한 노동에 수많은 생명이 빼앗겼는데 그런 상황하에서 조선인이 위안소에 갈 수 있을 수도 없었으며 가도록 했을 리도 없었다.

산업위안소는 송대(松代)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도 볼 수 있었다는 것은 앞에서도 말하였으나 이 송대(松代)의 경우는 결코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소위 조선인을 위해서라고 말하는 「표면적인 원칙」으로 위안소가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위단소에 간 사람은 지휘 감독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이다.

산업위안소에 관한 조사, 연구는 추진 되고는 있으나 증언자가 적기 때문에 해명은 곤란한 상황에 있다. 전후 보상문제에 있어서도 기업측의 책임에 대해 아직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모 해명은 향후의 과제로 연구되어야 된다.

주: (8) 『신농(信濃) 매일신문』 1991년 3월 22일호

VIII 위안소생활에 의한 후유증

「위안부」를 강요당한 여성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전시 이상으로 무거운 전후를 살아 왔다. 위안소에서 얻은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이 약 반세기에 걸친 오랜 세월 그녀들을 괴롭히고 온 것이다. 일본군이 폐전시 위안소제도와 관련한 문서를 소각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였다. 그것은 바로 제도가 황군의 치부였기 때문이다. 전후에도 위안소제도의 존재를 역사상 말살하려고 한 자세는 일관하였으나 피해자 다수의 증언, 소각을 면했던 공문서의 발견에 의하여 겨우 위안소의 군관리를 인정하는데 이르렀다. 이와 같은 전후의 일본정부 및 일본사회의 자세가 피해자의 짓밟힌 존엄을 회복하는 기회를 빼앗고 그녀들을 괴롭히고 왔다.

위안소생활이 여성들에게 들씌운 피해는 다종다양하지만 여기서는 육체적 후유증, 정신적 후유증, 생활에 미친 영향으로 분류했다.

1. 육체적 후유증

『증언 강제연행된 조선인군위안부들』¹⁾에 의하면 한국의 19명의 전「위안부」는 건강한 노후를 보낸 예는 거의 전무하다고 말할 수 있다.

방광염, 자궁내막염, 난관의 이상, 하혈, 폐경전의 생리통, 자궁이 벗어져 떨어지는 듯한 배의 아픔을 느끼는 사람, 자궁적출수술을 한 예 등 위안소에서의 상식을 초월한 빈도의 성적 관계를 강요당한 여성의 자궁은 파괴된 경우가 현저하다. 전후도 오래 동안 성병의 치유에 곤난을 느낀 사람이 밝혀진 것 만 이라도 2명이다. 매독(梅毒)으로 사산(死産), 무사히 태어났다고 생각한 장남도 40년 후에 병이 나와 정신병원에 입퇴원을 거듭하고 그때까지 계속해온 일도 생활도 모두 파탄되는 후대에까지 처참한 피해가 간 예도 있다²⁾.

그 이외에 옛날을 회고할 때마다 심장이 아파진다, 몸이 괴롭혀진다, 머리가 아프다, 잡이 안오게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비가 내릴 때마다 얼어맞은 장소가 아프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비슷한 보고가 북조선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종군위안부〉 범죄사건의 진상보고서』에 의하면 「증양 및 각 도, 시, 군등에서 공개증언을 한 34명을 검진한 결과 13명이 30~40대에 자궁을 절제(切除) 하는 수술을 하고 있으며 18명이 심한 대하(帶下) 증상에 의해 앓고 있으며 22명이 심장신경증, 3명이 언어장애 및 청각장애, 26명이 상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³⁾.

접경지의 여성이 입은 피해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필리핀의 경우도 얘기 를 낳을 수 없었다. 자궁적출수술을 하였다는 호소가 있으나 한국·조선의 여성

에 비하면 그 수는 적다. 이것은 필리핀의 여성이 가정과 지역주민이 일본군에 의해 학살된다는 극한상황하에서 간간, 윤간 피해도 있었으나 「위안부」로 된 여성에 비하면 피해를 받은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으로서 그 빈도도 적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강간시 당한 머리의 상처가 남아 있다. 발로 찬 가슴이 지금도 아프다, 원쪽 가슴의 뼈가 불어져 무거운 짐을 가질 수 없다는 등 폭력에 의한 상처가 생생하게 남아 있다. 언어장애, 불면증, 신경질이 되며는 피를 토한다는 보고도 있다.

2. 정신적후유증

육체적후유증은 개괄적으로 말하며는 피해를 받은 기간과 그 빈도에 비례한다. 정신후유증은 기간과 빈도에 거의 관계없이 피해자를 깊이 침식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위안부」로 된 식민지의 여성도 거부하며는 죽는다는 극한상황하에서 강간·윤간이 고듭된 점령지의 여성도 성을 유린당한 것으로 입은 정신적상처를 전후 아물수 없이 세월을 보내고 왔다. 오히려 세월이 갈수록 더 깊은 상처로 되어 침대하였으며 노인이 된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다.

한국의 이상목씨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당시를 생각하고나 이야기를 하면 머리가 아파져서 몇일간 깊이 잠잘 수 없습니다. 자리를 평고 마음껏 울어도 상쾌하지 않습니다. 남양에서 그와 같은 경험을 함으로써 나는 조울병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상태가 되면 겨울이라도 방에 문을 열어 놓지않으면 잡들 수가 없습니다. 늘 다니는 병원에서는 너무

신경을 쓰지 않도록 주의당했습니다. 또한 자고 있을 때 원쪽 종아리가 갑작스럽게 경련하는것이 고통입니다. 남양에서 도망칠 때에 칼로 찔려 피를 많이흘렸기 때문입니다. 여름은 몸이 괴롭고 몸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명란이란 두통약을 파라오에 있던 20대전반부터 마시고 왔는데 지금도 하루에 두알씩 빼짐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두통뿐만아니라 숨을 쉬는데도 고통스러워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注5)}

한국의 19명의 전「위안부」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불안정, 병적인 조울병상태를 자각하고 있다. 또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무섭다, 혼자서 있고 싶다는 호소도 있다. 비슷한 보고가 공화국측에서도 있다. 즉 「조사의 과정에서 만난 전〈종군위안부〉 피해생존자의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기피증, 자신결허증, 우울증과 같은 증상이 있었다」⁶⁾.

필리핀에서는 전쟁시를 생각하며는 머리가 멍해진다,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가질수 없다, 불면증, 신경증이 보고되어 있다.

이러한 피해자에 미친 정신적후유증은 이상목씨의 증언에서 볼수 있듯이 먼저 올린 온갖 육체적후유증과 상승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노폐된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다. 전사에 있었던 일을 생각한다→머리가 아파진다→잠잘 수 없다→갑자기 경련한다→우울상태에서 벗어날수 없다→두통만이 아니라 숨을 쉬는 것도 괴롭다는 듯이. 몸에 새긴 상처가 정신을 좀먹고 심신의 피로로 더욱 불면, 두통, 동기등의 증상이 무거워지는 것이다.

3. 생활에 준 영향

필리핀의 도시나·사리노그씨는 전후 독신으로 살아 왔다. 「일본군인의 행위로 입은 상처가 너무나도 커기 때문에 만약 결혼하며는 남편이 또다시 나를 괴롭히지 않을까 두려워」⁷⁾ 했기 때문이다. 필리핀의 많은 피해자들은 전쟁시, 또한 전후에 결혼하고 있으나 한국·조선의 피해자는 결혼하지 않고 있다 [레컨데 1993년 4월 2일, 일본국을 상대로 「필리핀 〈종군위안부〉 보상청구사건」을 일으킨 18명의 원고(原告) 중 기소장에 의하면 12명은 결혼 내지 이혼·재혼경험이 있어 5명은 결혼·미혼의 기재가 없다. 독신을 지켜온것은 사리노씨뿐이다]. 한국의 19명의 피해자중 6명이 결혼했으나 그중 5명이 후처, 그리고 6명전원이 결혼에 실패했다. 8명이 동거(同居) 또는 첩으로 가정을 가진 경험이 있으나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가 없었다⁸⁾. 공화국의 보고서에서도 「전〈종군위안부〉 생전자의 절대다수는 처음부터 단념하여 결혼을 안하고 있으며 또한 결혼을 한 경우도 미혼 남성과 결혼한 예는 6건밖에 없고 대체로 아이가 있는 남성의 후처로 들어간 예가 많다. 결혼한 전〈종군위안부〉의 대다수는 얘기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전처의 아이를 양자로하여 키우면서 살아가고 있다」⁹⁾고 지적하고 있다.

상상을 초월하는 빈도의 성을 유린당함으로써 「위안부」로 된 여성들은 생식능력이 파괴되었다. 또한 성유린에 의한 굴절감, 수치감에 의하여 같은 세대의 여성들의 일반적인 생활형태인 결혼생활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리고 가정생활에 들어가도 가부장을 중심으로 한 혼인제도속에서 후처, 첩, 또한 내연의 처라는 굴절적인 위치에서 참아야 했다.

처음부터 결혼을 단념한 사람, 혹은 어떠한 형식의 가정생활에 들어가도 결국은 거기에서 배척당한 사람등 위안소제도의 피해자는 홀로 사는 사람이 많다. 여성의 직업의 범위가 제한된 남자사회에서 직업을 위한 기능을 습득할 기회도 청춘시기에 빼앗긴 「위안부」의 독신생활은 빙곤하였다.

위안소제도는 그 희생으로 된 여성들의 사람으로서의 자연스러운 생활을 파괴하여 아물수 없는 온갖 후유증을 남겨 해온 것이다.

註

- 1)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정신대연구회편, 번역·종군위안부문제 우리 여 성 넷트워크 『증언 강제연행된 조선인군위안부들』 1993년 明石書店
- 2) 前掲書 P284
-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점령피해조사위원회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종군위안부> 범죄사건의 진상조사 중간보고」 1993년 P17
- 4) 「필리핀 <종군위안부> 보상청구사건소장」 1993년
- 5) 前掲書 『증언 강제연행된 조선인군위안부들』 P209~210
- 6) 前掲報告書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종군위안부> 범죄사건의 진상조사 중간 보고」 P16
- 7) 前掲訴狀 「필리핀 <종군위안부> 보상청구사건소장」 P41
- 8) 前掲書 『증언 강제연행된 조선인군위안부들』 P35~36
- 9) 前掲報告書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종군위안부> 범죄사건의 진상조사 중간 보고」 P16

IX. 결론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일본 정부에 의해 지금도 비공개 취급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곤란한 상황에서의 고찰이지만 이 분석에 의해 「종군위안부」는 완전히 무권리 상태에 놓여진 채 일본군에 의해 계속적으로 윤간당한 「성적 노예」였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생각한다. 「종군위안부」 문제는 여성 차별, 인종(민족) 차별, 계층 차별, 전쟁 범죄가 복합된 가장 악질한 인권 침해이다. 군인에 의한 계속적인 윤간의 제도화는 여성에 대한 조직적 폭력이었던 것은 새삼스럽게 얘기할 필요도 없다.

예외는 있었으나 일본인 「종군위안부」는 거의 성인이 된 「매춘부」에 한했던 것에 비해 그 외 아시아인의 「종군위안부」 [식민지, 점령지의 여성]의 압도적인 대다수가 미성년자이거나 성년이라도 소위 「매춘부」가 아니었다는 사실은 인종 [민족] 차별이라는 성격을 여실히 말해 주는 것이다. 또한 역류소에 수용된 오란다인 여성이 강제적으로 「종군위안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도 일본인 경운에는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의미로 본다면 명백한 인종 차별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백인 여성의 경우는 현지의 군사령부가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주의를 사전에 하여 강제가 판명된 경우에는 그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 사실은 일본인→백인→그 외 아시아인이라고 하는 인종 차별의 계층성이 있었던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종군위안부」로서 징집당했던 여성들은 일본인, 식민지 여성, 점령지의 여성을 불문하고 모두 다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학교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여성들이었다는 것은 경제적인 계층 차별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소위 「매춘부」 출신의 일본인 「종군위안부」도 가정이 경제적으로 빈곤하기 때문에 미성년이었을 때 부모에게 팔려거나 부모를 구하기 위해 매춘부의 세계로 들어간 것이다. 속았거나 강제적으로 「종군위안부」가 되었던 식민지, 점령지의 여성들의 경우도 빈곤하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일본군은 「성적 위안」을 강압했던 것이다.

강간 혹은 계속적인 윤간이 전쟁 범죄라는 것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다. 일본군의 각 부대에서는 대다수의 장교들이 자신이 속한 부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대부분의 강간 사건을 무마 시켜 버렸기 때문에 범죄로서 처분되는 경우가 극히 적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경우는 적발당했다. 예를 들어 타나카 류우키치 (田中隆吉) 육군성 병무국장은 1942년 5월 2일 육군성 국장회의에서 필리핀에는 강간이 많았었으나 중국보다는 적었었다고 말하여 특히 중국, 필리핀에서 강간 사건이 많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1). 또 한 오오야마 아야오 (大山文男) 육군성 법무국장은 같은 달 27일에 1941년 12월의 개전 이후 동남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약탈, 강간 사건은

76건으로 필리핀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타이, 베어마, 오란다령 동인도의 순이라고 말해 적발되었던 강간 사건의 개요를 파악하고 있었다²⁾. 이것은 빙산일각에 불과했으나 일단 군은 처분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종군위안부」에 대한 강제적인 성교는 범죄로 인식되지 않았다. 상대가 술에 취했다는 것을 이유로 성교를 거부한 「종군위안부」를 구타 폭행했던 어느 병사는 「엄중 설유」를 받았으며 휴업증을 이유로 성교를 거부한 「종군위안부」를 도로에 끌고 나와 폭행했던 또 다른 병사가 소속 부대에 「통보」 되었다는 예가 있으나

3) 이것은 범죄로서 처분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일본 정부, 일본군에 의한 「종군위안부」 제도의 창립, 운용, 「종군위안부」의 강제 징집, 강제 사역이 국제법에 위반되고 있었던 것, 혹은 전쟁 범죄였다는 것, 인도(人道)에 대한 죄였다는 것을 밝히는 길이 열렸다고 우리들은 판단한다.

그래서 현재 일본 정부의 태도나 견해에 어떤 문제와 결합이 있는가를 밝혀 본 연구를 마치고자 한다.

1993년 8월 4일에 있었던 내각 관방장관의 담화에 의하면 위안소는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치, 운영되었다」고 하고 「종군위안부」의 징집도 「주로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그 일을 담당했다」 등으로 군의 관여를 인정했으나 위안소의 설치, 운영, 관리나 「종군위안부」의 징집, 이송의 책임은 업자에게 있다고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이들의 주체는 업자가 아니라 일본 정부와 일본군에 있으며 업자는 그 수족으로 사용되었던 것에 불과한다.

같은 날에 발표되었던 내각관방 내각외정 심의실의 「소위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위안부들은 전지에서는 항상 군의 관리하에서 군과 함께 행동하도록 하였으며 자유도 없이 비참한 생활을 강요당했던 것은 명백하다」고 말하고 있고 이 쪽이 사실에 가깝다. 그렇다고 하면 일본 정부는 국제법 위반 혹은 전쟁 범죄였던 것은 인정해야 하고 배상을 시작해야 한다.

다음으로 정부는 점령지에서 군에 의한 징집의 의미를 무시하거나 경시하고 있다. 외정 심의실의 보고에 있는 「위안부 출신자는 일본을 제외하면 조선 반도 출신자가 많다」고 하는 것은 점령지 출신 「종군위안부」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며 「위안부의 모집에 대해서는 군 당국의 요청을 받은 경영자의 의뢰에 의해 알선 업자들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 것은 점령지에 있어서 「종군위안부」 징집의 보편적인 형태 즉 군에 의한 징집이라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개다가 「종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에 있어서 첫번째의 전제가 진상 해명이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경찰의 자료를 비롯한 각 성청(省庁) 자료를 비

공개, 미접견 상태로 또 많은 전 「종군위안부」로부터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일본인 「종군위안부」 제도를 운용한 관계자로부터의 조사를 흐지부지한 채 끝냈으며 그것도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채 조사를 끝낸다는 자세는 납득할 수 없다. 이것으로는 일본 정부에는 진상을 해명하려는 생가이 없다고 말해져도 변명할 길이 없을 것이다.

진상 해명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특별 조사관의 적극적인 주도권을 기대하며 본 원고를 마친다.

- (1) 긴바라 세츠조오 (金原節三) 육군성 의사과장 「육군성 업무 일지 적록」 후편 1942년 5월 9일, 요시미 요시아키 (吉見義明) 「군 중앙과 「종군위안부」 정책」 『전쟁책임 연구』 창간호, 1993년 9월, p.7.
- (2) 1942년 5월 27일. 동상 p.8.
- (3) 장간 사건 처분의 실례를 들면 1942년 7월 18일 오전 2시 경 중국 상해의 민가에 진입하여 15세의 중국인 소녀에게 총검을 들이대어 강간한 어떤 상등병은 그 집에서 고발되어 군법회의에 걸려 7월 27일에 징역 3년, 일등병에 강등되었다 [제3비행사단 사령부 「군인의 변사에 관한 보고」, 『육지보 (陸支普) 대일기』 [육군 중국 관계문서집] 1942년 제13호 소수, 방위청 방위 연구소 도어관 소장]
- (4) 중지나파견현병대 사령부 「1941년 11월 육군 군인 군속 비행표」 1941년 11월, 『육지보 대일기』 1942년 제6호 소수.

